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성격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1~2025)』에 따른 『2022. 인성교육종합계획』,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 계획』 등을 토대로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수립 · 추진해야 하는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계획과 활동의 일반적 · 공통적 기준을 담은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Contents

I.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기저.....	7
II.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 방향.....	11
III. 추진 목표별 세부 추진 계획.....	15
추진목표 01 존중학교 배려하는 생활교육.....	23
1-1. 원인해결 중심 생활교육.....	25
1-2. 회복적생활교육 확산.....	26
1-3. 또래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관계 형성.....	27
1-4. 학교 기숙사 학생생활교육.....	28
1-5.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29
추진목표 02 인성교육 내실화.....	31
2-1.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33
2-2.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	35
2-3. 학생봉사활동 실천 강화.....	36
추진목표 0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47
3-1.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49
3-2.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체제 구축.....	50
3-3.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과제 발굴.....	51
3-4.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생생활규정 개선.....	52
추진목표 04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53
4-1. 학생성장 지원.....	55
4-2.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56
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WeeCafe 다운」 운영.....	57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Contents

추진목표 05	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59
5-1.	수시·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61
5-2.	심화·입학형 대안교육 운영.....	62
5-3.	학생들의 꿈과 끼를 담은 다양성 학교 운영.....	63
추진목표 06	학생을 지키는 안전시스템 강화.....	65
6-1.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67
6-2.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69
6-3.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활동.....	71
추진목표 07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73
7-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75
7-2.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	79
7-3.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	80
7-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관계 회복.....	81
7-5.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운영.....	89
7-6.	학교폭력업무 교육지원청 운영.....	91
추진목표 08	학교폭력예방 여건 조성 및 협업체계 구축.....	93
8-1.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95
8-2.	배움터지킴이 운영.....	97
8-3.	범죄예방환경설계 구축.....	99
8-4.	학교폭력예방 거버넌스 체계 구축.....	101
8-5.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업 활동.....	103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Contents

추진목표 09	존중과 배려의 생명존중교육 강화.....	111
9-1.	Wee프로젝트 운영 및 컨설팅.....	113
9-2.	학생 도박 예방 활동 강화.....	118
9-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119
추진목표 10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123
10-1.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125
10-2.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강화.....	129
10-3.	법정 (성)폭력예방통합교육.....	131
10-4.	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137
10-5.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	139
IV. 부	록.....	141
●	각종 서식.....	143
●	경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	155
●	관련 법령.....	20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8
—	인성교육진흥법.....	229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234
—	청소년 보호법.....	24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3

I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기저



I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기저

정책 기조

- ▣ 학생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 존중의 생활교육
- ▣ 사안대처 중심 생활지도에서 관계회복 중심 생활교육
- ▣ 회복적생활교육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 만들기

주요 정책과제



2022. 생활교육

배려와 나눔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II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방향



II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방향

구현 목표

배려와 나눔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정책 기초

- ☑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
- ☑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육 실현

정책 기초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교육
2. 인성교육 내실화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4.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5. 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6. 학생을 지키는 안전시스템 강화
7.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8. 학교폭력예방 여건 조성 및 협업체계 구축
9. 존중과 배려의 생명존중교육 강화
10.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III

추진 목표별 세부 추진 계획



III

추진 목표별 세부 추진 계획

추진목표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교육

[추진계획]

-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
- 소통을 통한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생활교육 전환
- 또래상담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기숙사 학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생활교육
- 공정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으로 공교육 책무성 제고

- 1-1. 원인해결 중심 생활교육
- 1-2. 회복적생활교육 확산
- 1-3. 또래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관계 형성
- 1-4. 학교 기숙사 학생생활교육
- 1-5.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추진목표 2

인성교육 내실화

[추진계획]

- 인성교육 기반 관계중심적 학교문화 정착
-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 인성교육 인식전환 및 공감대 확산
-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배우는 학생봉사활동 운영

- 2-1.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 2-2.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
- 2-3. 학생봉사활동 실천 강화

추진목표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추진계획]

-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
- 「교육인권경영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체제 구축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교재개발·보급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3-1.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 3-2.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체제 구축
- 3-3.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과제 발굴
- 3-4.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생생활규정 개선

추진목표 4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추진계획]

- 학교부적응 등 위기 징후 조기 발견·치유를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
- 회복중심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 학업중단 요인별 예방 대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제 구축

- 4-1. 학생성장 지원
- 4-2.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 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제 구축 및 「WeeCafe 다운」 운영

추진목표 5



맞춤형 대안 교육 운영

[추진계획]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학교 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
-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
-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 및 다양성 학교 지원

5-1. 수시·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5-2. 심화·입학형 대안교육 운영

5-3. 학생들의 꿈과 끼를 담은 다양성 학교 운영

추진목표 6



학생을 지키는 안전시스템 강화

[추진계획]

-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을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
-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어울림프로그램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추진
-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통한 조기발견 및 보호 시스템 마련

6-1.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6-2.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6-3.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활동

추진목표 7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추진계획]

-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역량 강화
-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
-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선도 및 보호조치 강화

- 7-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7-2.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
- 7-3.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
- 7-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관계 회복
- 7-5.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운영
- 7-6. 학교폭력업무 교육지원청 운영

추진목표 8

학교폭력예방 여건 조성 및 협업체계 구축

[추진계획]

- 고화질 CCTV 구축 및 운영
-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활동 지원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학교 구축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 8-1.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 8-2. 배움터지킴이 운영
- 8-3. 범죄예방환경설계 구축
- 8-4. 학교폭력예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8-5. 유관기관 다양한 협업 활동

추진목표 9



존중과 배려의 생명존중교육 강화

[추진계획]

-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한 건전한 성장 지원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안 적용 생명존중교육 강화
-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내실화

9-1. Wee프로젝트 운영 및 컨설팅

9-2. 학생 도박 예방 활동 강화

9-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추진목표

10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추진계획]

- 체계적 지속적 성교육 내실화 추진
-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및 대응력 강화
- 왜곡된 성인식 문화개선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10-1.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10-2.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강화

10-3. 법정 (성)폭력예방통합교육

10-4. 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10-5.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교육

- 1-1. 원인해결 중심 생활교육
- 1-2. 회복적생활교육 확산
- 1-3. 또래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관계 형성
- 1-4. 학교 기숙사 학생생활교육
- 1-5.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추진목표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교육

1-1

원인해결 중심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담당
☎ 210-5253

1 추진 근거

- 「2022 경남교육」 2-2-2.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 2022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2022.1.7.)

2 추진 목적

- 훈계나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생활교육’으로의 전환
-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3 추진 내용

-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학생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 존중의 생활교육
 - 사안대처 중심 생활지도에서 관계회복 중심 생활교육으로 전환
 -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교육공동체 만들기
 - ※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인쇄 책자 학교별 배부(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 파일 탑재)
- 학생생활교육 전문성 강화
 -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온라인 연수 실시(2022.2.16.)
 - 단위학교별 생활교육 전문성 강화 자체 연수 활성화

행 정 사 항

- ▷ (학교)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 ▷ (도교육청/지원청)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1-2

회복적생활교육 확산

민주시민교육담당
☎ 210-5273

1 추진 근거

- 「2022 경남교육」 2-2-2.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 2022. 경남 인성교육 시행계획

2 추진 목적

- 『회복적생활교육』 철학의 공유와 실천을 통하여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평화로운 학교 실현

3 추진 내용

- 회복적생활교육 학교 단위 연수 지원(30교)
- 회복적생활교육 지원단 운영(권역별 1팀, 총 4팀)
- 회복적생활교육 모델학교 운영(8교)
- 회복적생활교육 전문적 학습동아리 지원(20팀)
-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회복적생활교육 연수 지원(전 지원청)

행 정 사 항

- ▷ (지원청/학교) 회복적생활교육 교직원 연수 운영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 ▷ (도교육청/지원청) 회복적생활교육 지원단과 갈등조정 지원단 양성 및 운영
관계회복 지원단 구성 및 운영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1-3

또래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관계 형성

대안치유담당
☎ 210-5267

1

추진 근거

-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 「2022 경남교육」 2-2-2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교육
- 2022. 또래상담 운영학교 선정 계획

2

추진 목적

- 또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교우관계 개선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선도
-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생 주도의 갈등해결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 함양

3

추진 내용

- 또래조정 및 또래상담 운영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사업
-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또래상담 운영학교로 선정하며, 미배치교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 선정
- 또래상담 지도교사 기본, 심화, 특성화 과정 연수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창·체 동아리활동으로 ‘친구사랑 동아리(또래상담반)’ 개설, 또래상담자(10명 내외) 선발 및 교육 후 또래상담자로 임명하고 활동 관리
- 또래상담자는 1:1 현장 또래상담, 사이버 또래상담, 학업지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멘토·멘티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 운영
- 또래상담사업 성과보고대회, 우수상담 지도자 교육감 표창

1-4

학교 기숙사 학생생활교육

대안치유담당
☎ 210-5266

1 추진 근거

- 「2022 경남교육」 4-3-1.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2022. 학교 기숙사 학생 생활교육 지침

2 추진 목적

- 기숙사 입사 학생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기 주도적 생활능력 향상 등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추진 내용

- 2022. 방학중 기숙사 운영학교 관리 방안 안내(1월 중)
 - 코로나19 대응 기숙사 운영 방안 안내
- 2022. 학교 기숙사 학생 생활교육 지침 안내(3월)
 - 기숙사 운영 방침, 학생 생활교육, 기숙사 내 감염병 예방 관리 등 안내
- 2022년 기숙사 운영학교 현황 및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출(4월)
 -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수립 대상: 기숙사 운영 전학교
- 학교 기숙사 생활교육 학교 자체점검 및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현장점검 실시(8월)
-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개정 TF팀 운영(10~12월)
- 「학교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12월)
 - 기숙사 운영학교별 책자 배부 및 PDF파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1-5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민주시민교육담당
☎ 210-5253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설치)
-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2 추진 목적

- 해당 학생의 전학/퇴학 적합성 여부를 심사·조정하여 학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

3 추진 내용

- 재심 대상
‘학생선도위원회’ 퇴학, ‘교권보호위원회’ 전학/퇴학 처분 불복
- 재심 절차
 - 재심 신청
 - 장소: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직접 접수(제2청사 6층)
 - 기한: 학생선도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신청서 서식: (부록)각종서식 6,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 탑재
 - 결정 통보: 접수 후 30일 이내

행 정 사 항

- ▷ (학교) 학생선도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전/퇴학 처분 시 재심 안내
- ▷ (도교육청)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접수, 심의, 결과 통보)



인성교육 내실화

- 2-1.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 2-2.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
- 2-3. 학생봉사활동 실천 강화

추진목표 2



인성교육 내실화

2-1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담당
☎ 210-5253

1

추진 근거

- 2022. 인성교육 시행계획(2022.1.7.)

2

추진 목적

-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별 특색있는 인성교육 활성화 추진

3

추진 내용

- 인성교육 기반 민주적 학교 문화 정착
 - 개방적·수평적인 참여, 존중과 배려의 소통 중심 교육공동체 정착
 -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착 기반 마련
 - 존중과 배려의 인권 친화적인 문화 조성
 -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인권문화 만들기
 -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성 존중과 가치관 교육 확대
-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 정착
 - 학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따뜻함이 있는 행복한 아침맞이
 - 바른 언어 사용 생활화
 - 사이버폭력 예방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홍보·캠페인 활동 강화
 - 미디어 전문가, 언론인 등을 강사로 활용하여 교사 연수 및 학생 강연 실시
 -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함양 교육 강화

● 찾아가는 인성교육

- 경상남도교육삼락회와의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40년 가까이 교육현장에서 쌓은 인성교육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교육 원로들의 봉사 및 기부에 의한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 교육 운영

-
- ▶ 대상: 전 초·중·고등학생
 - ▶ 학교 방문 강사: 경상남도교육삼락회 위촉강사
 - ▶ 교육 인원: 학급 단위(※1개 학년 전체 실시할 경우 전반 강사 배치)
 - ▶ 교육 시간: 1차시(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 ▶ 대상 학교 준비물: PPT 가능한 장비 일체
 - ▶ 강의 분야: 인성교육 전반
 - ▶ 추진 시기: 2022.5. ~ 11.
-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2-2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

대안치유담당
☎ 210-5267

1 추진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 「2022 경남교육」 2-2-1 인성교육 내실화
- 2022. 인성교육 시행계획(2022.1.7.)

2 추진 목적

-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부 및 지자체,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의 책임 추진 과제들의 성과 점검
- 인성교육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확산, 차년도 인성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인성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수렴 기회 마련

3 추진 내용

- 조사내용
 - 경남의 인성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 인성교육진흥법에 관한 인지와 이해수준 평가
 - 경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 자료에 대한 평가와 요구
 - 학교교육활동 전반의 인성친화적 변화 정도 평가
 -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
- 조사대상
 - 경상남도 소재의 초·중·고교의 학생·교사 및 학부모 대상(희망자)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10월중)
 - 설문 구성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추진과제들의 성과 점검을 위한 내용으로 제시
 - 조사 항목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여 전체 25문항 내외의 설문지로 작성하여 제출

2-3

학생봉사활동 실천 강화

민주시민교육담당
☎ 210-5265

1 추진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09-41호 및 제2015-74호)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자치부, 2017)

2 추진 목적

- 학생·교사·학부모들에게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학교단위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조직·운영 활성화

3 추진 내용

1 봉사활동 편성·운영

가. 편성

- 1)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
- 2) 봉사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별, 학년별 학생성장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획 수립·지도
- 3) 학교 교육계획에 봉사활동 시수 편성, 지도, 운영, 평가 계획 반영
- 4)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학생의 수준, 계절 및 장소를 고려하여 편성

나. 운영

- 1)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
 - 2) 체험 학습과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운영
 - 3)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학기 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권장)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
- ※ 시간 확보를 위한 단순 봉사활동 및 일회성 봉사활동 지양

I

II

III

세부
추진
계획

IV

-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확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 4) 학생·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강화
 - 단위 학교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연중 수시 홍보
 -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 인정 기관 및 시간, 원칙 등 적극 안내
 - ※ 학기 초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사전 예방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인정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 확인 강화
 - 특히 활동비를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사전 확인 철저
- 5)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봉사활동 사전 교육 시간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함
- 6) 봉사활동시간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교내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부족시간을 교외(개인) 봉사활동으로 채우도록 지도

학교 급별, 학년별 연간 봉사활동 기준시간(※ 2022학년도 한시적 적용)

학교급	학년	교내봉사활동	교외(개인)봉사활동
초등학교	1-4	연간 5시간	폐지
	5-6	연간 7시간	
중학교	전학년	연간 10시간	
고등학교	전학년	연간 10시간	

※ 중학교 봉사활동의 고입 성적 처리 기준

-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현재 중3): 3년간 15시간(1학년 0시간, 2학년 5시간, 3학년 10시간 기준으로 반영하며, 학년 구분 없이 15시간 만점으로 운영)
- 2024학년도(현재 중2) 이후의 고입 봉사활동 시수는 추후 결정 예정이며, 2021학년도 기준시수 5시간, 2022학년도 기준시수 10시간 적용 예정

- 7)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연간 10시간 이상 확보·운영(중·고등학교)
- 8) 단위학교에 학생봉사활동의 지도를 위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조직·운영
- 9) 「학생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사전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승인 하에 실시
- 10) 봉사활동 시간은 시간단위로 입력하되, 동일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

11)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가)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자원봉사 시간의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 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한다.
 -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3) 실천	•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 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2) 영역별 지침 - (다) 봉사활동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증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 가능 내용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지역축제, 지역박람회 전시 및 관람 포함)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인정**

－ ‘선플달기’ 작성 최대 12시간 봉사활동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연간 3회 이내)

○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인정**: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하는 학생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

－ 국제기구가 주관하고 국가 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요청하여 시행

－ 실제 평가(사전검사, 예비검사, 본검사 모두 포함) 수행 시간 인정

(다)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봉사활동 활동영역으로 안내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 실적 인정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라)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1365),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VMS),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DOVOL)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봉사활동 장소를 학년초 단위학교별로 학생, 학부모에게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반드시 안내하여 추후 민원의 소지를 없앨 것

2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학교 자체 기준 및 운영 계획 마련하여 운영
 -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 관리 철저로 학생 봉사활동에 신뢰도 제고
 - 봉사활동 수업연구회의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과 연계 운영 권장
- 학교 자체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마련하여 운영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 강화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3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가. 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 실행, 평가 등 자율적 구성
- 나.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의 인정 범위, 실적 확인자의 범위, 인정시간의 범위 등을 결정하고 각 위원 업무 담당
- 다.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본 계획과 ‘경상남도 학업성적관리지침’,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을 근거로 학교 실정에 알맞게 학생봉사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

- 2)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가 학생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
 - 3) 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
 - 4) 위원회는 학교 내 학생봉사동아리 및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봉사단’ 조직·운영
 - 5)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시행 전에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질 관리를 위하여 지도교사 및 학부모지도 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장 지도를 강화
- ※ 기타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은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회의록 비치)
- ※ 특수학교 및 특수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시 개인별 학생을 고려하여 봉사활동 관련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등을 인정하는 방안 고려(학생이 원할 경우 해당)

라. 위원회 운영 시 유의할 점

- 1) 학년 초에 개인 봉사활동 연간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가 검토·지도
- 2) 개인 봉사활동 전 담임교사에게 개인봉사활동 실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지도
- 3) 봉사활동 추가 시간의 인정에 대해서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 4) 비영리 단체 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사전 교육 철저 지도)
- 5) 봉사활동 인정 여부의 확인
 - 청소년 단체 활동일 경우 프로그램 내에 있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프로그램 첨부)
 - 현장 체험학습, 특기·적성·계발활동과 예체능 활동 등은 불인정
 - 일과 시간 중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나, 일과 시간 외의 활동은 인정
- 6) 위원회 운영 내용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회의록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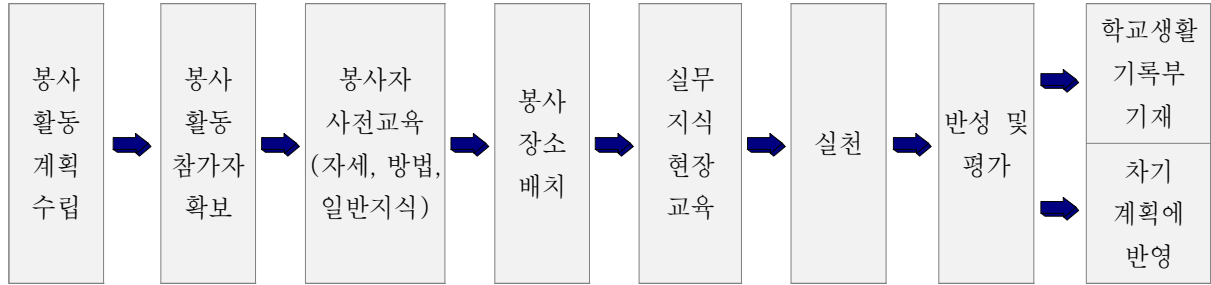
4 각급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 수립

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1) 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실시되는 봉사활동으로써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되며,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또는 그룹 단위로 이루어짐
- 2)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추진 계획(예시)

연번	활동명	지도교사	대상인원	활동 내용	활동 예정 시간
1	환경도우미	○○○	각반1명	◦ 방과 후 쓰레기 분리수거	1일 10분×6일 = 1시간
2	등하교지도	○○○	6명	◦ 등하교 시간 질서 및 복장지도	1일 10분×12일 = 2시간

3)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과정



4)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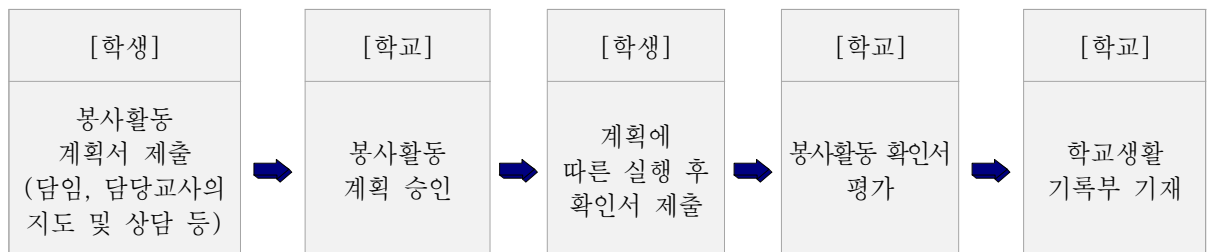
과 정	내 용
봉사활동 목록 작성	·사전조사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활동대상 선정 ·활동 목록 작성
홍 보	·교사, 학부모 연수·문화, 게시판, 방송 ·활동 프로그램 안내
계획서 작성·제출	·활동 단위별로 계획서 작성

5)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목록 작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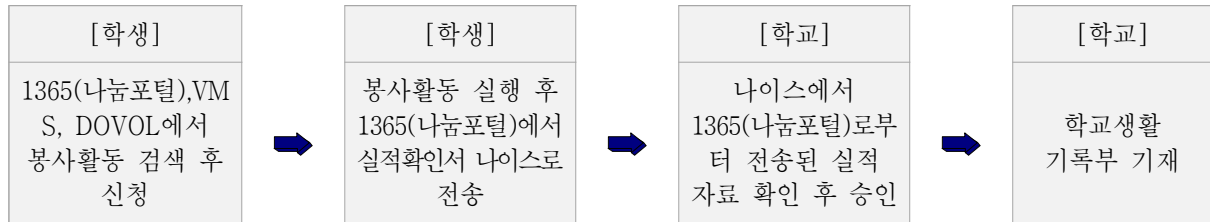
영역	활동내용	기관 (장소)	위치(주소)	소요 인원	가능한 시간대	연 락 처	지 도 자
일손 돕기	반찬 만들기 보조	창원 복지관	학교앞 (창원00동 00번지)	7명	일요일 오전 09:00-17:00	☎ 000-0000 담당자: 000	복 지 사 김 복 순 지도교사 홍 길 동

나.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1) 1365(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2) 1365(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1365(나눔포털), VMS, DOVOL 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연계 동의 필수

- 각 사이트에서 모두 연계동의 해야 함(1365(나눔포털) ⇔ VMS, 1365(나눔포털) ⇔ DOVOL)
- 처음 연계동의시 기존 자료 일괄 전송 후부터는 자동으로 연계됨

※ 실적 연계 사이트(1365(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교육청,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다. 학생 봉사활동 평가

1)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체크리스트,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2)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예시)

기 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참고)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 (1) 학생 평가 - (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라. 학교단위 학생봉사동아리 및 「가족봉사단」 조직·운영 권장

마. 학교생활기록부(NEIS) 누가 기록

바.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보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진급 처리된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통해서 전 학년도 실적 추가 입력

사. 학생 봉사활동 유의점

- 1)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 가족 단위 봉사활동, 사제동행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운영
- 2)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으로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등 비교육적 행태 금지
- 3)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인식 제고

아.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 활성화

- 1)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 관리 철저로 학생 봉사활동에 신뢰도 제고
 -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실적 부당 기재 사례: 해외봉사활동 실적 및 결시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참여 시간 기재,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등
- 2)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 우수사례·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장학지도
- 3)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 강화
- 4)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협조 체제 구축
- 5) 정책지원형 봉사활동 수업연구회 운영 성과 공유 및 확산

5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실천

가.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추진 권장

1) 자매결연 절차



- ☞ 조사: 지역 내 봉사활동 가능 시설 조사
 - 도교육청홈페이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시·군 자원봉사센터)
- ☞ 협의: 가능한 학교 간 동일 시설 중복 피함
 - 학교: 교직원,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거쳐 대상시설 추천
 - 대상기관: 추천된 대상기관 및 기타기관 자매결연 관련 협의
- ☞ 계획 수립: 상호(학교, 시설)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시설에서는 맞춤형 봉사활동 계획 수립, 권장)
- ☞ 자매결연: 결연(협약)식 실시(적극적인 홍보권장)
- ☞ 실천: 학년 또는 학급단위로 결연기관 연계한 계획적인 봉사활동 전개
- ☞ 평가 및 반성: 절차 및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와 반성

2)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학교 전통 세우기

나. 1교 1나눔 체험 봉사활동 활성화

- 1) 청소 위주의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특기와 재능을 나누는 체험 봉사활동 추진
- 2) 1교 1복지시설 결연 봉사활동 시 특기와 재능을 통한 위문경연 봉사활동 권장

다.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표창

- 1) 대상: 유공자(학생, 교사, 학교)
- 2) 표창시기 : 12월 중

6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 1) 지역 내 봉사활동 대상기관 목록, 내용, 시기, 프로그램 등 개발, 안내(시·군청 관련 부서와 협조)
- 2) 지역 자원봉사단체 사이트 링크: 학생봉사활동 관련 자료 탑재 및 활용
- 3) 학생·학부모·교사·봉사 대상 기관 담당자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실시
- 4) 시·군 봉사담당자 및 단위학교별 담당교사 교육실시 및 지원
- 5) 학생봉사활동 장학자료 활용 안내
- 6) 2009.개정교육과정 및 2015.개정교육과정 봉사활동 시간 우선 확보
- 7) 지역 자원봉사활동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활동진흥센터(www.gnyouth.net)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1365),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VMS),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DOVOL), YMCA, YWCA 등

행 정 사 항

▷ 2022학년도 자매 결연기관과 결연 지속 및 학년별, 학급별 봉사활동 계획 및 추진 권장

▷ 1교 1복지시설 결연 봉사활동 시 특기와 재능을 통한 위문경연 봉사활동 권장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3-1.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 3-2.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체제 구축
- 3-3.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과제 발굴
- 3-4.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생생활규정 개선

추진목표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3-1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인권경영담당
☎ 210-5172

1 추진 근거

- 「2022 경남교육」 2-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2022. 경남 교육인권경영 기본계획

2 추진 목적

- 인권 문제 상황을 지각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함양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인권’ 내용요소의 배움중심수업 지원으로 인권교육 내실화

3 추진 내용

-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인권교육 역량강화
 - 전문적학습공동체 「인권(노동인권)교육 실천교사단」, 인권친화모델학교 운영으로 연중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실천, 사례집 발간 및 보고회를 통한 일반화
 - 교직원 역량강화 직무연수(기본, 심화, 전문, 관리자, 원격)를 통한 학교인권교육 실천역량 강화
- 청소년 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중·고등학교용 학교 교육과정 및 청소년의 삶과 연계한 학생 참여중심 교재개발
 - 관련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및 범교과 학습 주제 운영을 위한 도움 자료
-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 대상: 초등학교 4~6학년(노동인권교육: 6학년), 중·고등학생(희망 학급 단위), 시기: 4~11월
 - 공모로 구성한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단이 희망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운영
 - 아동·청소년 인권(노동인권)교육으로 인권감수성 및 문제해결 역량 키우기
 - 표준교안 작성 및 강사 워크숍,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로 전문성·역량 향상
- 인권문화의 날 운영 및 교류·협력
 - 인권 역사탐방, 강연, 영화제 등 인권감수성 향상 문화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공동 연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 정 사 항

▷ (학교)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신청,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실시

3-2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체제 구축

교육인권경영담당
☎ 210-5173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 「2022 경남교육」 2-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2022. 경남 교육인권경영 기본계획

2 추진 목적

- 교육 현장 인권침해 종류별 관련 전문부서 협력 및 통합 지원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상황별 맞춤형 지원
- 교육공동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지원으로 교육활동의 안정성 보장과 인권 존중문화 조성

3 추진 내용

- 교육인권경영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통한 정책의 신뢰도 확보
 - 교육인권경영 기본계획, 인권개선 권고, 교육인권영향 평가 계획·결과 등 관련사항 자문
 - 교직원 및 교육공동체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
- 인권보호 전문부서 협력체제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
 - 상담 신청에 대해 사안 맞춤형 도교육청 전문부서 협력체제 운영 및 지원
 - 인권침해 진정에 따른 조사 및 권고, 특별장학지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인권보호 ONE-STOP 지원 시스템 운영
 - 교육인권경영센터 및 진담인력 운영(도교육청 제2청사 4층, 사무·상담·교육공간)
 - 교육인권경영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인권 상담 및 인권 소통 창구 운영
 - 온·오프라인 법률, 행정, 상담 지원 등 조치 시행과 시정 권고 등 맞춤형 지원
- 인권보호 지원 시스템 홍보 및 활성화
 - 인권친화지도 '교실, 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공동사례집, 인권존중 라디오 캠페인, 소식지 '훈훈한 인권세상, 톨레랑스', 청소년 노동인권 앱 개발 및 배포로 인권보호 시스템 홍보 및 교육인권경영센터 이용 활성화

행 정 사 항

- ▷ (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 상호 존중문화 조성, 인권침해 상담 방법 안내
- ▷ (도교육청/지원청) 교육인권경영센터 및 인권보호 시스템 홍보 및 이용 지원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3-3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과제 발굴

교육인권경영담당
☎ 210-5174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 「2022 경남교육」 2-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2022. 경남 교육인권경영 기본계획

2 추진 목적

- 교육공동체 인권실태 현황 파악 및 교육인권경영 평가와 환류
- 연차적 인권증진 과제 발굴 및 운영으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인권증진 확산

3 추진 내용

- 교육인권영향평가 확대 적용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일부, 희망학교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
 - 전문기관 연구위탁(3~5월), 담당자 워크숍(5~6월), 지표개발 및 중간평가(6~8월), 적용 및 보고회 개최(8~10월)
- 「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
 - 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 인권 의식, 학교생활 인권실태, 인권교육,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발전방안 마련(온라인, 하반기)
 - 교육연구정보원과 현장연구형 전문직학습공동체 자율연구과제로 공동연구 추진
-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 전문기관 연구의뢰를 통한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증진 및 정책 제언에 활용
- 교육공동체 「인권증진 실행과제」 발굴 및 운영
 - 인권분야 전문관계자 토론회 ‘경남인권포럼’ 등을 통한 교육문화 속 인권증진 방안 및 실행과제 모색
 - 기관(부서)별 교육인권경영 인권증진과제 설정 및 실천, 추진 결과 공유

행 정 사 항

- ▷ (학교)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증진과제 발굴 행사 참여 안내 협조
- ▷ (도교육청)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증진과제 발굴 행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3-4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생생활규정

교육인권경영담당
☎ 210-5172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중등용, 교육부, 2014)
- 「2022 경남교육」 2-1-3.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자치 활성화
- 2022. 경남 학생생활규정 개선 및 컨설팅 계획

2 추진 목적

-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생활제규정 안착
- 학생생활제규정 내 인권침해 요소 개선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3 추진 내용

- 학교규칙 제·개정 및 공포
 -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3~4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5~6월
 - 제·개정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홈페이지-정보공개방(누구나 열람)): 6월
 - ☞ ‘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이하 표준안)’의 형식(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제개정절차규정)을 따를 것을 권장. ‘기숙사운영규정(기숙사 운영학교 해당)’ 학칙에 포함
 - ☞ 학교 자체 인권친화적 규정 점검: 체크리스트 31개 항목(표준안/ 부록/ 체크리스트)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준수 및 홍보 강화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제·개정안 발의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학급회의, 학생총회, 설문조사 등) → 시안 마련(초안 → 토론회를 통한 안내 및 의견수렴 → 최종시안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학교장 결재 →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적용 및 환류
 - ☞ 표준안/ 부록/ 운영안내(개정 절차)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생생활제규정 개선 및 지원
 - 전 중학교 대상 학생생활제규정 전수조사(6~7월) → 학교별 개선권고(8월) → 학교별 제·개정(9~11월) → 결과보고(12월)
 - 전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12월)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5~12월, 인권·법률·교육전문가)
 -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리플렛 번역본 신청(3월) 및 배부(5월)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 4-1. 학생성장 지원
- 4-2.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 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쉼터」 운영

추진목표 4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4-1

학생성장 지원

대안치유담당
☎ 210-5263

1 추진 근거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2021. 위(Wee)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내부결재)

2 추진 목적

- 정서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학습무기력, 따돌림, 비행 등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 위기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통한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통해 긍정적 자아형성과 학교적응력 향상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3 추진 내용

- 예방적 학교상담 활동

구분	상담자	활동
1차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전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상담(전화, 대면) •면밀한 학생 관찰을 통한 상담 또는 담임교사 또는 전문 상담교사 상담의뢰
2차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생, 학부모 상담활동 •학생심리평가, 상담교육 및 행사 •학부모, 교원 대상 자문 및 연수

-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미배치교는 Wee센터를 통한 상담활동 지원
- 반응적 학교상담 활동
 - 위기학생 발생시 위기개입 및 치료 지원
 - 학생에 대한 외부기관 상담 지원시 기관과 학교 구성원 연계 역할

4-2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

대안치유담당
☎ 210-5265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2022.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숙려제 운영 지침

2 추진 목적

- 부적응 및 위기 원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적응력 회복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망 구축

3 추진 내용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망 구축
 -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반영
 - 부적응사유로 학업중단율이 높은 학교 대상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 현장중심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숙려제 선도학교 운영
 - 학교 부적응 해소 및 다양성 교육 확산을 위한 학교 내 대안(꿈키움)교실 운영 내실화
 - 학생 상담 활성화
 - 학급 단위(담임), 학교 단위(상담 부서) 학생 상담 계획 수립·실천
 - 전문상담교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상담 전문가 적극 활용
 - 위기학생을 위한 Wee 클래스 및 Wee 센터 적극 활용
 -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반영

행 정 사 항

- ▷ (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계획 수립 및 시행(학기초)
- ▷ (도교육청/지원청)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숙려제 운영 지침 안내(2월)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WeeCafe'

대안치유담당
☎ 210-5262

1 추진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 추진 목적

- 학교 부적응 또는 위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휴식·소통 공간 제공

3 추진 내용

- 설치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234(합성동)
- 주요 시설: 북카페, 요리교실, 학습실, 상담실, 댄스실 등
-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휴식	- 북카페 형식의 독서, 휴게 공간 및 간식, 급식 제공 - 와이파이 환경, 인터넷 검색 등 컴퓨터, 모바일 사용 환경 지원 - 세탁, 샤워 공간 마련
상담	- 전담인력 배치로 지속적인 상담 지원 - 상담을 통한 필요전문기관 연계(Wee센터 등)
교육	- 학업복귀 도움정보 제공(방송통신중, 검정고시 등) - 자원봉사자, 꿈키움 멘토단 활용한 멘토링 서비스 - 다양한 기술, 공방 강좌 개설
진로	-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기관 안내 - 북카페, 요리교실을 통한 다양한 자격증 과정 지원
체험활동	문화체험(문화, 예술, 공연 등) 및 체육활동 지원
복지	- 일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쉼터 역할 지원 - 의료지원(비상약 비치, 병원Wee센터 연계, 의사협회 재능 기부 요청) -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 자신이 만든 수제공예품을 판매 및 카페 아르바이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용돈 마련 지원



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 5-1. 수시·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 5-2. 심화·입학형 대안교육 운영
- 5-3. 학생들의 꿈과 끼를 담은 다양성 학교 운영

추진목표 5



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5-1

수시·맞춤형 대안교육 운영

대안치유담당
☎ 210-5265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2

추진 목적

- 학교 부적응학생 대상으로 학교 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위기 극복 및 학교 적응력 향상(단위학교 책임지도제 실현)
- 학생의 흥미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적용을 통한 운영 내실화 유도

3

추진 내용

- 2022. 「학교 내 대안(꿈키움)교실」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학교 지정(1월~2월)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안내 및 적용
- 대안교육 및 진로직업중심 위탁기관 지정(2월 지정)
- 2022. 「학교 내 대안(꿈키움)교실」 담당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 2022. 「학교 내 대안(꿈키움)교실」 계획서 제출 및 우수사례 홍보(3월, 연중)
- 2022. 「학교 내 대안(꿈키움)교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및 상시 컨설팅 실시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평가회 및 우수사례 공유: 2022. 12월

행 정 사 항

▷ (학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우수사례(2022.11.) 및 정산서 제출(2023년 1월)

▷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대상 홍보 및 지역협의회 운영 협조

5-2

심화·입학형 대안교육 운영

대안치유담당
☎ 210-5265

1 추진 근거

- 2022. 대안학교 네트워크 구성·운영 계획
- 2022. 대안학교 우수프로그램 선정·지원 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각종학교), 제60조의 3(대안학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 운영)

2 추진 목적

- 대안학교 간의 교육 경험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한 새로운 경남 대안교육의 방향 마련 및 현장의 교육적 수요 반응을 통한 다양성 교육 실현과 교육 본질 회복
- 대안학교의 우수 대안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공모·선정하여 운영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 내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촉진 및 우수사례 확산

3 추진 내용

- 대안학교(7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6교)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 대안학교 네트워크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대표단 구성
- 다양한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비 지원
- 대안학교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교재·도서 구입비, 기자재비, 외부 강사 인건비 등 지원

행 정 사 항

- ▷ 대안학교 우수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3월)
- ▷ 다양한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3월)
- ▷ 대안학교 네트워크 구성(4월) 및 분기별 모임 정례화 추진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5-3

학생들의 꿈과 끼를 담은 다양성 학교

대안치유담당
☎ 210-5265

1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각종학교), 제60조의 3(대안학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 운영)
-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 추진 목적

- 생태, 치유, 돌봄, 자생력이 살아있는 배움 공동체를 지향하여 기존 학교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자아실현 기회 제공
- 학업중단 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폭넓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협업형 대안학교를 통해 정규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

3 추진 내용

- 학교 교육계획에서 생태, 치유, 돌봄, 자생력이 살아있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학업중단 학생 및 기존 학교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자아실현 지원
- 다양성 학교인 경남고성음악고, 밀양영화고, 거창연극고 운영의 내실화 지원
- 민간위탁형 김해금곡고와 남해보물섬고 운영의 조기 안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행 정 사 항

- ▷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생을 지키는 안전시스템 강화

- 6-1.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 6-2.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6-3.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활동

추진목표 6



학생을 지키는 안전시스템 강화

6-1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학교폭력담당
☎ 210-5276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 「2022 경남교육」 2-2-4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업 강화

2

추진 목적

- 초등학교(병설유 포함), 특수학교 학생 대상 각종 유괴 사고 예방
- 초등학교(병설유 포함), 특수학교 학생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

추진 내용

- 운영학교: 전 초등학교(병설유 포함) 및 특수학교
- 운영형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초등학교,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선정), (U-)안심알리미(특수학교 학생 지원)
- 운영기간: 2022. 1. ~ 2022. 12.(10~12개월, 방학기간 일부 포함)
→ 지역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대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지원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대상자

- ① 초등학교 1~2학년
- ② 3~6학년 학생 중 아래 ㉠~㉣에 해당되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 ㉡ 다문화, 탈북자녀
 - ㉢ 장애아
 - ㉣ 조손가정 자녀
 - ㉤ 한부모 가정 자녀

※ 병설유치원은 희망하는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사업내용
 - 등·하교 안심알리미: 등·하교 SMS 알림 서비스 제공, 학교 교육활동 SMS 전송 서비스
 - U-안심알리미: 위치정보 조회, 긴급호출, 안심지역 설정 등
- 기타사항: 2022년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 운영 계획 알림
(민주시민교육과-22872, 2021.11.25.) 참고

행 정 사 항

- ▷ (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수요 조사 및 운영
- ▷ (교육지원청)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자체 계획 수립, 계약 체결 및 운영
- ▷ (도교육청)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6-2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담당
☎ 210-5272

1 추진 근거

-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 ~ '24)
- 2022. 경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 계획

2 추진 목적

-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어울림+사이버어울림)'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편적·통합적 예방교육 실시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단위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3 추진 내용

- (어울림 프로그램 전면 운영) 학교·학년·학급 교육계획에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포함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교육'영역에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영역에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교과연계형' 및 '주제선택형'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 관심군 학생 학급에서 어울림 심층프로그램*, 사이버 어울림 심층프로그램**, 학급 자치 시간 및 동아리활동 시간에 또래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 * 어울림 심층프로그램: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초저/초고/중/고
 - ** 사이버 어울림 심층프로그램: 사이버 언어폭력·명예훼손·불링·갈취·스토킹·영상유포 등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단위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11차시 내외 활용 권장)

● 학교폭력 예방 역량(‘어울림 역량’) 및 문제 유형

구분	어울림 역량	문제 유형
어울림 프로그램	< 6대 역량 > ① 공감 ② 의사소통 ③ 갈등해결 ④ 감정조절 ⑤ 자기존중감 ⑥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 4개 유형 > ① 신체·물리적 폭력 ② 언어폭력 ③ 따돌림 ④ 사이버폭력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 8대 역량 > ① 사이버 공감 ② 사이버 의사소통 ③ 사이버 갈등해결 ④ 사이버 감정조절 ⑤ 사이버 자기존중감 ⑥ 사이버 자기조절 ⑦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⑧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 6개 유형 > ① 사이버 언어폭력 ② 사이버 명예훼손 ③ 사이버 따돌림 ④ 사이버 갈취 ⑤ 사이버 스토킹 ⑥ 사이버 영상유포

행 정 사 항

- ▷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반영
- ▷ (도교육청)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 관련 자료 확보 및 보급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6-3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활동

교육인권경영담당
☎ 210-5176

1 추진 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 「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2021.8.5. 일부 개정)
- 「2022. 경남교육」 2-2-3 학교폭력 예방 대응 역량 강화
- 2022. 경남교육청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활동 기본계획

2 추진 목적

- 경남교육청 아동학대예방 기본계획 수립
 - * 유·초·중·고·특수학교 아동학대 사안 보고 및 사안 발생 시 각 지원청 연계 조사 지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책무성 강화
-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학대 피해아동 학습권 보호·지원 시스템 마련

3 추진 내용

-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보수교육
 -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
-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유·초·중·고·특수 희망 학교(학급) 100개 내외 선정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
- 홍보 및 교육자료 활용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존중 인식 확립 교육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학생용, 학부모용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 시스템 및 안전망 구축
 -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한 ‘아동학대예방 조기 발견 시스템 및 안전망 구축’
 - 학교에서는 장기결석, 빈번한 지각, 조퇴 등에 대해 선제적 방안 마련
-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유를 위한 돌봄 프로젝트 실시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와 가족 단위 치료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실시

행 정 사 항

- ▷ (학교)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예방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에 협조
- ▷ (도교육청)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돌봄 프로젝트 계획 수립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 7-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7-2.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
- 7-3.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
- 7-4. 피해학생 보호·치유
- 7-5.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단 구성·운영
- 7-6. 학교폭력업무 교육지원청 운영

추진목표 7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7-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담당
☎ 210-5276

1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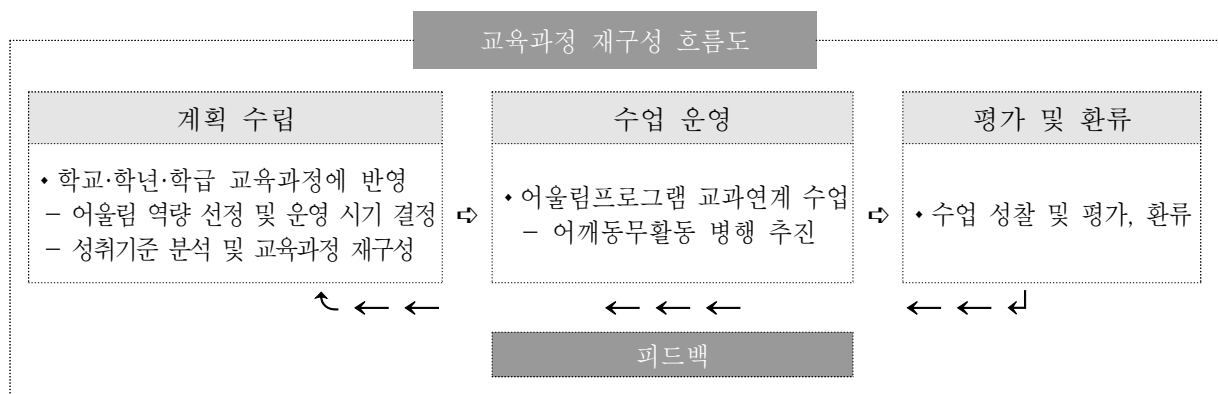
-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 ~ '24)
- 2022. 경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 계획

2 추진 목적

- 학교폭력 예방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편적·통합적 예방교육 실시
-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체험·공감 중심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운영

3 추진 내용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어울림 프로그램의 수업시간 활용 확대
 - (기본 방향) 학교 교육계획(학교, 학년, 학급 교육과정)에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수업시수를 편성하고, 교과 진도 계획 등에 반영



- 교육과정 편성·운영
 - (운영 대상/교과) 모든 학급*/모든 교과

- *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 (이하 생략)
- (운영 주체) 담임교사, 교과교사(초등의 교과전담교사 포함)
- ※ 다만 전문상담(교)사의 단독 수업은 지양하고, 협력 수업 등으로 진행
- (수업 시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급별 연간 11차시 내외로 편성·운영

예시: 어울림 프로그램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방안

◆ (초등) 수업 시수 편성 예

- ▶ 초 1-2학년: 어울림 기본(5차시) + 어울림 심층(학폭 인식 및 대처_3차시)
- ▶ 초 3-6학년: 어울림 기본(5차시) + 사이버 어울림 기본(3차시)

◆ (중등) 수업 시수 편성 예

- ▶ (교과) 교과연계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국, 도, 사)을 교과별 3차시 운영
- ▶ (창·체) 학년별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을 5차시 운영

- (수업 운영)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내용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2개 이상의 역량을 교루 적용
- 특히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은 가급적 연간 2~3차시 이상 운영을 권장하되, 정보윤리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여 업무부담 완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정보 관련 내용

- ◆ (초) 정보통신윤리 관련 내용을 '도덕' 과목에 추가하였으며, 5-6학년군 '실과'에서 SW 기초 소양 교육 내용을 17시간 이상 확보 의무화
- ◆ (중) '정보' 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전환, 34시간 이상 편성 의무화
- ◆ (고) '정보' 과목을 심화 선택에서 일반 선택으로 전환하고, '생활과 윤리', '생활과 과학', '사회문제 탐구' 과목에서도 관련 내용 포함

- 어울림 프로그램을 타 수업 내용*과 연계 시 해당 영역의 수업 시수를 모두 인정
- * 인성교육, 안전교육, 다문화 교육, 장애이해교육,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정보윤리교육,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 (수업방식) 학생의 적극적 참여와 자기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협력학습, 토론수업 및 체험·실습 등 학생 참여중심 수업* 전개
- * 블록타임(Block-Time), 코티칭(Co-Teaching), 코러닝(Co-Learning) 등을 활용해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수업(Flipped Learning), 교과간 융합수업, PBL, 토의·토론 학습 등
- (평가) 프로젝트평가, 자기성찰평가, 동료평가 등의 비중을 높이고, 학생부 기재 시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 정도* 등을 다면적으로 서술
- *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정서적 공감 정도, 의사소통 기술 및 타협과 설득 능력, 갈등 상황 인식 및 합리적 대처 능력, 소속감과 자신감, 정서 인식 및 부정적 정서 조절능력 향상 정도, 언어 사용 습관 정도 등

● 단위학교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학교급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제고
- 특히, 기존 연구·운영학교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수업 모형 및 우수사례·성과 등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예방교육 추구

예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업 사례

- ▶ 수업 교과(과목)/형태: 국어(화법과 작문) / 프로젝트 수업
- ▶ 주제: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 및 정보통신윤리 의식 함양

과목	화법과 작문		차시	활동
학년	2학년		1차시	- 온라인 상에서 정보통신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 공유하기 -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전해보기
수업 개요	수업형태	프로젝트 수업	2차시	- 정보통신윤리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를 뉴스 기사, 신문, 잡지 등에서 찾아 사례 분석해 보기 - 정보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해 보기
	주제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 및 정보통신윤리의식 함양	3차시	온라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언어생활 습관에 대해 모둠 토론하기
	핵심역량	공감, 의사소통, 인터넷윤리의식	4차시	- 선택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 제작 계획 수립하기 - 포스터 제작 목적 상기, 역할 분담 - 포스터 문구 및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 떠올리기 - 필그림, 채색 등 효과적인 표현 방법과 재료 준비 방안 마련하기
	목표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피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이버 언어 환경 정화를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5차시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포스터 제작하기
			6차시	교내 곳곳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캠페인 활동하기
			7차시	활동에 대한 소감 발표 및 상호 피드백하는 시간 갖기

- (학생동아리 운영)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심이 높은 학생 중심에서 모든 학생이 직접 능동적으로 홍보·캠페인, 또래상담 전개 등 참여 유도

※ 학생 서포터즈단 구성·운영,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 SNS 칭찬 릴레이, 선플 SNS기자단, 사이버 지킴이, 방송언어 모니터단 운영,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 등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학생·교사 중심 자율동아리 ‘한국인터넷트립단’ 운영(전국 초·중·고 450교, 방통위) 등 전개

- (연계·협력 강화) 교사·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등

● 학교 자체해결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

－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전담기구의 구성 및 역할

- － (구성)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학부모를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 － (역할) 학교폭력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사실여부 확인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장의 의무

- － 학교폭력을 축소 및 은폐 금지
- － 학교폭력 발생 사실 및 학교자체해결 사건 및 조치 결과 보고
- －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 학교폭력예방 관리자, 책임교사 연수 실시

- － 학교폭력 책임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 등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 역량 및 사안처리 역량 제고
- － 적법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
- － 단위학교 화해 분쟁 조정 역량 강화
- － 관계성 향상을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확산

행 정 사 항

- ▷(학교)교육과정 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등 사업 수행
- ▷(도교육청)교육과정 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학교 선정 및 운영·관리

7-2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

학교폭력담당
☎ 210-5272

1 추진 근거

-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 ~ '24)
- 2022. 경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 계획

2 추진 목적

-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사이버폭력·언어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시·도 및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운영 활성화

3 추진 내용

- 학교폭력 예방 주간 운영
 - 학교,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예방 주간 운영: 예) 3월 3주, 9월 3주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급단위 역할극, 학생토론회, 학교폭력 관련 문예행사(글짓기, 그리기, 표어, 포스터 등),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등
- 2022. 경남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 (기본 방향) 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사이버폭력 포함)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지역 내 거점학교로서 역할
 - (역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수업모형을 개발·적용하여 지역 학교에 확산하고 일반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 어울림프로그램을 활용한 단위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운영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체제 구축(유선을 통한 컨설팅 병행)
 -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과 협력 중심의 컨설팅 운영
 -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비하는 컨설팅단 내 사이버폭력어울림 중점 컨설팅단 운영
- 학교폭력종합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 사업 운영
 - 2022년 사이버폭력 및 학교폭력종합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 운영
 -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련된 종합 정보 제공

행 정 사 항

- ▷ (학교) 학교 교육계획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포함
- ▷ (도교육청/지원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7-3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

학교폭력담당
☎ 210-5272

1 추진 근거

-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 ~ '24)
- 202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
- 2022. 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경상남도교육청)

2 추진 목적

-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단위 학교의 사안처리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으로 단위 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3 추진 내용

- 학교폭력의 단계별 처리 과정 안내를 통한 단위 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및 이행, 불복절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등 단계별 학교의 대응 및 처리 절차 제공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학생, 학부모 상담 및 관계회복 내용 제공
- 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제작 배부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법령, 유권해석, 교육부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경남 가이드북 제작 배부
 - 공문시행문, 첨부문서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단위학교 업무경감
 - 학교폭력 업무를 처음 맡는 교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북 제공

행 정 사 항

▷ (도교육청) 회복적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운영
(☎ 210-5273)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7-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관계 회복

학교폭력담당
☎ 210-5273

1 추진 근거

- 「2022 경남교육」 2-2-3.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사업 2022년도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알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235(2021.9.2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 보호)
- 국가시책사업별 계획-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2 추진 목적

-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적인 인성교육 활성화 추진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학교생활 회복력 증진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체제 구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좋아경남교육 구현

3 추진 내용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개념 및 방향설정, 인성교육 목표설정,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한 실행력 제고
 - 단위학교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행(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 ‘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 센터’ 지정 운영
 - 운영 개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고위험군 학생 중 시급한 치유 및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병(의)원 전문의에 의한 심리 치료
 - 7개 거점교육지원청과 치료지원 병(의)원과의 업무 협약으로 정도가 심각한 피해학생과 학교부적응
고위험군 학생의 신속하고 안정된 치유 및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 방법

- 1단계 조치(Wee클래스에서 일시보호)
- 2단계 조치(Wee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 피해 정도가 약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 3단계 조치(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치유): 1인당 5회 내외(종합심리검사 포함) 치유
 - ▶ Wee센터 심층검사 → 전문의에 의한 전문적 치유 및 치료 상담여부 결정(본인 및 보호자 동의) → 지정 병원 전문의와 치유상담 일시 협의 → 병원 치유
 - ※ 거점 교육지원청 Wee센터 이외는 Wee센터 심층검사 → 전문의에 의한 전문적 치유 및 치료 상담여부 결정(본인 및 보호자 동의) → 거점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담당자와 협의 → 지정병원 전문의와 치유상담 일시 협의 → 병원 치유
 - ▶ 병원 치료 시 상담일반코드(Z코드)로 분류
 - ▶ 치유 및 치료비: 무료
- 4단계 조치(병원 연계 Wee클래스 추수 보호활동)
- 5단계 조치(정신과 환자 등록 후 적극적 치료): 학생 및 보호자 동의 철저
 - ▶ 완치를 위한 집중 치료 실시(입원 등) - F코드 등록
 - ※ 치료 및 입원비: 가해학생 측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병원비 지급 →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 경남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현황 ※추후 변동 가능(2월 발송 공문 참조)

① 창원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10개)

구분		성명	직책	전화	비고
창원 교육지원청		이○○	교육장	210-0301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강○○	담당장학사	210-0391	
		노○○	Wee센터실장	210-0461	희망드림센터업무담당팀장
		정○○	업무담당자	210-0413	희망드림센터업무담당자
1	튼튼꾸러기 한의원	김○○	간호사	266-5759	창원성산 마디미서로 26 한독빌딩 402
		진료항목	ADHD, 틱장애, 지적장애, 분노조절장애, 정서불안장애		
2	배신경 정신과의원	배○○	기획실장	244-8686	마산합포구 서성로 56
		강○○	원무과	244-8686	
		진료항목	정서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클리닉, 심리상담사와 연계 심리치료		
3	동서병원	이○○	부장	230-1800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265
		조○○	대리	230-1815	
		진료항목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신경성식욕부진 치료, 공포증 심리치료		
4	진해연세사랑병원	홍○○	병원장	540-7704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 76
		황○○	대리	540-7702	
		진료항목	기분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대인관계 장애		
5	의령사랑병원	엄○○	원무과장	600-2003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105-8
		진료항목	정신건강 교육, 사회기술 훈련, 사회적응 훈련		
6	국립부곡병원	이○○	팀장	520-2610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145
		홍○○	주무관	520-2615	
		진료항목	기분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현병		
7	루이스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이○○	원장	275-7595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26 한독빌딩 4층
		진료항목	ADHD, 학습장애, 스트레스, 공황장애, 강박증, 조울증, 조현증 등		
8	마음과마음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곽○○	원장	274-2332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91 X-PLUS 빌딩(정우상가 옆) 8층
		전○○	부원장	274-2332	
		진료항목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강박증, 조현증 등		
9	삼성공감정신 건강의학과의원	이○○	원장	292-1275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75
		진료항목	우울증, 공황장애, 성인 및 소아 ADHD, 불면증, 스트레스 클리닉 등		
10	창원 파티마병원	박○○	병원장	270-1551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진료항목	스트레스, 우울, 중독(약물, 게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ADHD등		

② 진주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5개)

구분		성명	직책	전화	비고
진주 교육지원청		박○○	교육장	740-2001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천○○	담당장학사	740-2156	
		박○○	Wee센터실장	740-2091	희망드림센터업무담당자
1	한빛정신 건강의학과 의원	강○○	병원장	741-1515	진주시 축석로 178
		강○○	병원장		
		진료항목	심층면담 및 정신건강감사, 보호자면담, 종합임상검사, 개인정신치료 및 보호자교육, 신경자극요법(뉴로피드백)		
2	공감정신건강 의학과 의원	홍○○	병원장	748-3500	진주시 순환로 527, 7층 701호
		임○○	전문의		
		진료항목	스트레스, 우울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적응장애, 강박장애, 불면증, 치매 및 인지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ADHD, 지적장애, 발달장애, 틱장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3	새빛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채○○	병원장	743-8775	진주시 진주대로 1083 2층
		진료항목	ADHD,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및 인지장애, 중독, 심리검사, 신경자극요법, 보호자 면담		
4	해마음 정신건강 의학과의원	황○○	병원장	754-3375	진주시 진주대로 880 3층
		정○○	담당전문의		
		진료항목	ADHD,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및 인지장애, 중독, 심리검사, 신경자극요법, 보호자 면담		
5	박지혜 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박○○	병원장	755-8808	진주시 사들로 83, 3층
		진료항목	우울, 불안, 스트레스, 심층면담 및 보호자면담, 심리검사, 정신분석치료		

③ 통영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3개)

구분	성명	직책	전화	비고
통영 교육지원청	류○○	교육장	650-8000	통영시 죽림2로25-32
	유○○	담당장학사	650-8055	
	송○○	Wee센터실장	650-8025	희망드림센터업무담당팀장
	강○○	업무담당자	650-8048	희망드림센터업무담당자
1 김찬우정신 건강의학과의원	김○○	병원장	633-7515	거제시 중앙로 1983
	진료항목	신경증,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및 청소년 특수클리닉		
2 통영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노○○	병원장	646-3111	통영시 중앙로 289 그랜드 빌딩 4층 402호
	진료항목	심리검사, 면담치료(정신, 인지행동 등), 부모면담 및 교육, 약물치료 등		
3 거제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왕○○	병원장	635-7475	거제시 고현로 88, 202호
	진료항목	심리검사, 면담치료, 약물치료, TMS치료, 부모면담 및 교육 등		

④ 사천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3개)

구분		성명	직책	전화	비고
사천 교육지원청		김○○	교육장	830-1507	사천시 삼상로 85
		김○○	담당장학사	830-1711	
		임○○	Wee센터실장	830-1721	희망드림센터업무담당자
1	동희병원	김○○	병원장 (담당전문의)	055-852-2250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74
		진료항목	심층면담 및 정신건강검사, 보호자면담, 종합임상검사, 개인정신치료 및 보호자교육		
2	박지혜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박○○	병원장 (담당전문의)	055-755-8808	경남 진주시 사들로 83 3층
		진료항목	심층면담, 보호자면담, 종합심리검사, 가족치료, 놀이치료, 학부모 양육상담		
3	허윤정신건강 의학과의원	허○○	병원장 (담당전문의)	061-791-7975	전남 광양시 공영로 88 3층
		진료항목	심층면담 및 정신건강검사, 보호자면담, 종합임상검사,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		

⑤ 김해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4개)

구분		성명	직책	전화	비고
김해 교육지원청		김○○	교육장	330-7601	김해시 구지로 105(대성동)
		최○○	장학사	330-9645	
		조○○	Wee센터실장	070-8767-7576	희망드림 센터업무담당팀장
		이○○	전문상담교사	070-8767-7573	희망드림 센터업무담당자
1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	병원장	330-6000	김해시 분성로 94-8
		김○○	전문의	330-6064	
		진료항목	정신병, 신경증,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치료		
2	공감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백○○	전문의	325-8275	김해 능동로 149-6, 남일빌딩 301호
		진료항목	우울증, 화병, 신경성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교우관계회복 상담		
3	해맑은 정신과의원	배○○	전문의	332-2622	김해 삼계중앙로 22 302호
		진료항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종합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유 상담		
4	한사랑병원	김○○, 신○○	병원장	722-7000	김해시 김해대로2272번길 43-47
		신○○	전문의	722-7015	
		진료항목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발달·학습장애, 인터넷중독, 학교적응장애 등		

⑥ 밀양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5개)

구분	성명	직책	전화	비고
밀양 교육지원청	김○○	교육장	350-1501	밀양시 밀양대로 1522
	박○○	담당장학사	350-1555	
	최○○	Wee센터실장	350-1490	희망드림센터업무담당자
1	나눔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권○○	병원장	부산광역시 부전동397-58 (목원빌딩 4층)
		진료항목	신경증,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및 청소년 특수클리닉	
2	양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양○○	병원장	밀양시 북성로2길 15-9
		진료항목	우울, 불안, 조현병, 스트레스, 공황장애, ADHD	
3	정성훈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정○○	병원장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280 아성N타워
		진료항목	신경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청소년 특수클리닉	
4	밀양우리병원	신○○	병원장	밀양시 중앙로 114
		진료항목	우울, 불안, 스트레스, ADHD, 조현병 등	
5	밀양정신건강 의학과의원	홍○○	병원장	밀양시 삼문중앙로 38, 2층
		진료항목	우울, 불안, 스트레스, ADHD, 수면장애, 조현병 등	

⑦ 양산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5개)

구분	성명	직책	전화	비고
양산 교육지원청	박○○	교육장	379-3001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청룡로 53
	이○○	장학사	379-3182	
	곽○○	전문상담교사	379-3265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업무담당자
1	맑음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이○○	병원장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5
		진료항목	진료상담,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계획 수립 및 시행	
2	울산 마더스병원	김○○	병원장	울산 남구 화합로 107
		황○○	진료과장	
		장○○	상담실장	진료상담,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계획 수립 및 시행
3	아이원의원	정○○	원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5 위너스빌딩 5-6층
		진료항목	발달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뚜렛 장애, 아동청소년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가족내 위기개입, 학교내 생활 위기 개입	
4	강병구정신건강 의학과의원	강○○	원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32 2층
		진료항목	ADHD,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 틱 및 뚜렛 장애, 불안 및 우울증,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식이장애, 수면장애, 인터넷 중독 등	
5	부산아이 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서○○	원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로 563, 광장메디컬 5층
		진료항목	소아청소년정신건강 진료상담, ADHD, 틱 장애, 우울증, 불안증, PTSD, 학습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 거점 지역청별 병(의)원 협약 여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확정 공문 반드시 확인)

●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 운영

－ 운영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치유를 통한 정서적 회복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회기술향상 및 대인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적응력 신장

－ 운영 내용

프로그램명	내용
학습 (기초학습)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등교거부, 이탈 등을 방지하고, 수준별 기초학습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무기력을 극복하고 통제감을 형성하며, 나아가 학교복교 시 적응력을 고취
표현 (예술치유)	학교폭력으로 피해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술치유적 접근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정화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관계 (심리상담)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불안을 보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집단 및 개인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이 제공된 상황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
예방 (전문교육)	7대 안전교육 및 인성교육, 성교육 등의 전문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과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각종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은 물론 일상생활 적응능력을 향상
도전 (체험활동)	다양한 외부체험활동, 사제동행여행,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지도 등의 직접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 및 자기조절능력을 배양
사랑 (가족치유 및 지역연계)	가족상담, 지역연계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관계 망을 넓히고,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중함과 공동체적인 마음 가짐

●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 운영

－ 사업 목적



- 학교폭력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지원체계 마련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의 상처 치유, 공동체성 및 가족응집력 향상
-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정해체 방지, 학교폭력이 재발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
- 피해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현
-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전환과 공교육 신뢰감 회복.

- 사업 내용

프로그램별 운영방안	■ 피해가족 치유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부모 대상 치유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감형 위로상담가로 양성(위로상담가 양성교육, 보수교육) • 찾아가는 위로상담 서비스 연중 활동 진행(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상담 등) • 월 1회 센터별 위로상담가 회의 실시(사례 및 홍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연 등) •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진행 • 피해부모 커뮤니티 운영: 교육, 치유 프로그램
	■ 힐링가족캠프 • 각 지역센터 별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힐링캠프 실시 (1박 2일)
	■ 대학생 멘토링 • 상담·사회복지·청소년·교육 등 관련 전공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정서지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2학년 이상) 대상 멘토 양성교육 실시 (1일, 6시간 이상 교육) • 피해학생과 1:1 결연을 실시하여 멘토링 활동 진행 • 월 4회 이상 온라인,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한 상담실시 상담 후 센터 담당자의 상담 피드백 전달 • 월 1회 이상 정기모임(문화, 체육활동 등) 진행

행 정 사 항

▷ (지원청/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지원청/학교) 피해학생 및 학부모 프로그램 안내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7-5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운영

학교폭력담당
☎ 210-5273

1 추진 근거

- 「2022 경남교육」 2-2-3.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 국가시책사업별 계획-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교육부 2016.12.30.)
-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20~2024)」 ('20.12.22)

2 추진 목적

- 가해 행동에 대한 회복적 책임과 배움, 피해학생의 회복을 통한 공동체의 성장과 변화
-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갈등 조정과 관계회복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모두의 회복 지원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실현

3 추진 내용

- 관계회복 지원단 운영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및 협의(1월)
 -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창원, 김해, 거제) 중심의 T/F팀 구성
- 유관기관 협업 및 관계회복 전문가 인력풀 구성(2월)
 - 경남경찰청 회복적 경찰 활동 제도와 협업 및 MOU 체결
 - 관계회복 전문가 인력풀(경남교육청 회복적 생활교육 갈등조정 지원단, 경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회복적 경찰위원(범죄, 검찰 조정 활동 포함), 회복적 마을 교사, 비폭력 대화 중재 전문가,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 대화, 갈등 조정 등을 내용을 하는 연수 80시간 이상 연수자, 그 밖에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단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구성
- 관계회복 지원단 거점 지원청 지정 및 18개 교육지원청 구성(2월~3월)
 - 동부권역: 김해, 양산, 밀양(거점지원청: 김해)
 - 중부권역: 창원, 함안, 창녕, 의령(거점지원청: 창원)
 - 서북부권역: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거점지원청: 진주)
 - 서남부 1권역: 고성, 통영, 거제(거점지원청: 거제)
 - 서남부 2권역: 사천, 남해, 하동(거점지원청: 남해)

● 관계회복 지원단 현장 지원(상시)

- 운영 기간: 2022.3. ~ 2023.2.
- 구성 인원 : 교육지원청별로 관계 회복 지원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함
- 지원 내용
 - 관계 회복 지원단 활동 여건 마련 (학부모, 지역 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연수 실시)
 - 관계 회복 지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 실시
 -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연수 강사지원 및 컨설팅 실시
 - 당사자 간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 및 갈등 조정 프로그램 지원
 - 대화 모임을 통해 드러난 관련 학생들의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행 정 사 항

- ▷ 학교 요청: 초·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현장 지원 요청
- ▷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관련 학생(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관계회복 및 치유 상담 지원
- ▷ 거점지원청 및 18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상황을 누적 기록 후 연말에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으로 보고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7-6

학교폭력업무 교육지원청 운영

학교폭력담당
☎ 210-5272

1 추진 근거

- 2022. 경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 계획
- (학폭법 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및 학교 자체해결제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 추진 목적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학교업무 경감 지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대비 인력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3 추진 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운영

구분	(기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속	학교	교육지원청
처분권자	학교장	교육장
재심(불복)	피해자 → 지역위원회 가해자 → 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구성	5~10명	10~50명
학부모위원	과반수	3분의 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과정 운영
 - 학교폭력 사안 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관계회복 인식 제고 연수과정 운영
 - 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500여명 대상 권역별 연수과정 운영

행 정 사 항

- ▷ (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매뉴얼 제작 보급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학교폭력예방 여건 조성 및 협업체계 구축

- 8-1.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 8-2. 배움터지킴이 운영
- 8-3. 범죄예방환경설계 구축
- 8-4. 학교폭력예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8-5. 유관기관 다양한 협업 활동

추진목표 8



학교폭력예방 여건 조성 및 협업체계 구축

8-1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학교폭력담당
☎ 210-5276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 「2022 경남교육」 2-2-4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업 강화

2

추진 목적

- 학교폭력 예방·대처 능력 신장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학교 내 200만 화소 미만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교체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3

추진 내용

- 2022. 학교 내 CCTV 화질개선 계획
 - 예산액: 금480,000,000원(금사역팔천만원)
 - 지원 일정

추진내용	일정	비고
■ 「CCTV 교체」 희망조사 및 선정	2022. 3. 2. ~ 3. 31.	
■ 「CCTV 교체」 선정 지원금 재배정 및 교부	2022. 4. 1. ~ 4. 30.	
■ 집행 및 집행결과 보고	2022. 5. 1. ~ 7. 31.	
■ 정산 및 반납에 따른 추가 선정·지원, 정산	2022. 8. 1. ~ 12. 31.	

- 지원기준

- 교내 CCTV 전체를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카메라로 개선 가능한 학교
- 교내 CCTV 중 100만 화소 미만 비율이 높은 학교
- 현재 저화질 CCTV 비율이 높고 과거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학교

● 기대효과

- 고화질 CCTV를 통한 실시간 관제환경 구축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 CCTV 화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365일 온종일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의 학교폭력 사전 예방

행 정 사 항

- ▷ (학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화질개선 추진
- ▷ (도교육청/지원청)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안전 인프라 지속적 확충
추진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8-2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폭력담당
☎ 210-5276

1 추진 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2022 경남교육」 2-2-4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업 강화

2 추진 목적

-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 내 순찰활동, 등·하교지도, 외부인 출입통제 등 학생보호 및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의 봉사활동을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 지원

3 추진 내용

- 예산액: 7,661,292천원(운영비 7,640,000천원, 연수경비 21,292천원)
- 운영학교: 955교(원)(2019년 862교, 2020년 895교, 2021년 917교 지원)
- 지원기준: 지원 희망 단설유·초·중·고·특수·기타학교
- 2022년 주요 내용

구분	2022년
신분 (봉사시간)	자원봉사자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이하)
1일 봉사활동비	1일 봉사시간 4시간 초과 40,000원 1일 봉사시간 4시간 이하 20,000원
활동기간 제한	동일학교 최대 3년(공개위촉+재위촉 2회 포함) 동일 학교 3년 근무하여 활동 종료한 경우 새로운 위촉공고를 하여 위촉

- 운영 방침
 - 각급 학교(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운영
 - 배움터지킴이 관리자: 교감 또는 학생 생활지도(인성안전) 담당 부장
 - 배움터지킴이는 근로계약(채용)이 아닌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
 -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실)비로 1일 40,000원 또는 20,000원 지원
 -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지원

● 운영 내용

- 운영기간: 2022. 3. 1. ~ 2023. 2. 28.
- 활동기간: 주40시간·일 8시간 이하 기준(학교실정에 맞게 조정)
 - ※ 1인 또는 2인의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 1인 상시활동, 2인 오전·오후별 활동, 2인 요일별 활동 등)
- 배움터지킴이 역할
 -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 상호 협의된 역할은 학교 자체 운영 계획에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 영역에 있어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배움터지킴이 활동여건 관련 숙지사항
 - 배움터지킴이 활동일지(봉사활동 및 상담일지 등)는 작성하지 아니함
지출증빙을 위한 최소한의 봉사일자 현황만 작성
 - 배움터지킴이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노력(학생보호인력실 등)
- 운영 평가
 - 단위 학교(원)에서는 매년 12월~2월에 운영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자체 실시
 - 전 교직원, 학생(학생회임원 등), 학부모 대표(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학교(원)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위촉 여부 등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
- ※ 민주시민교육과-346(2022.01.07.)호 공문 참고
- 『알림』2022.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알림』

● 기대효과

- 학교(원)의 요구에 맞게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및 봉사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여 봉사 활동의 내실화 달성
- 배움터 지킴이 지원 학교(원)를 추가하여 등하교·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행 정 사 항

- ▷ (학교)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운영 내실화
- ▷ (교육지원청)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연수 및 활동 지원

8-3

범죄예방환경설계 구축

학교폭력담당
☎ 210-5276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 「2022 경남교육」 2-2-4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업 강화
- 제17대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이행백서

2 추진 목적

- 학교 안전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여 학교폭력 및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적용 확산
- ※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3 추진 내용

- 사업 상세 내용
 - 202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학교 운영(7교 선정)
 -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학교 내실화 운영
(2020년 10교 → 2021년 7교 → 2022년 7교)
 - 학교폭력예방 및 범죄예방에 필요 및 문제의식을 갖춘 학교를 선정 후, CPTED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환경개선 실시
 - 안전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및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주요 적용 사례

연번	영역	구체적 적용 사례
1	활동 활성화	○ 사각지대 및 학교폭력·흡연 등 다발 발생 우려 공간에 운동시설, 휴게공간, 공연시설 등 설치
2	영역성 강화	○ 사각지대 밝은 색 도색 ○ 학교 출입문 주변 바닥패턴 변화(외부도로와 구분) ○ 학교 map 부착 및 방문자의 이동경로 표시 ○ 바닥 패턴의 변화(교내/교외, 보행로/운동장/트랙 등) ○ 교사 층별 도색 차별화 ○ 학교와 주변을 구분해주는 표지판 혹은 경고문 부착 ○ 건물 map 부착 및 무단침입 방지 경고문 부착 ○ 학생과 직원을 외부인과 구분하는 명찰 패용

3	접근통제	○ 계단실 관리(계단 아래 공간을 막아 창고로 활용) ○ 담장 주변 가시형 수종 식재 ○ 출구전용 도어 설치 ○ 차량 차단기 설치 ○ 출입구 최소화 및 일방통행로 지정 ○ (넘어올 수 없는 높이와 재질의) 학교 출입문 설치 ○ 잠금장치의 설치(정·후문, 교사 출입문, 교실 등) ○ (넘어올 수 없는 높이와 재질의) 담장 설치 혹은 기 설치된 담장 정비
4	관찰시야 확대	○ 사각지대 조명 설치 ○ 화장실 출입문을 투시형으로 교체 또는 보완 ○ 건물 모퉁이 볼록거울 설치 ○ 교무실·행정실 등에서 외부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목 유지관리 ○ 투시형 담장 설치 ○ 건물 내 창문 및 출입문을 투시형으로 교체 ○ 비상벨·비상전화 설치(운동장 혹은 건물 내) ○ 화장실 내 연기감지기 설치 ○ 교장실 및 교사연구실 등 층별 분산배치 ○ 자전거 보관소의 감시 가능한 장소 배치
5	명료성 강화	○ 출입수칙 게시, CCTV 설치 안내판 게시
6	유지관리	○ 교내 사각지대 및 학교폭력·흡연 등 다발공간의 환경미화 ○ 출입문·담장 주변 환경정비 ○ 쓰레기·낙서 등 물리적 무질서 정비 ○ 야외학습장·컨테이너박스·쓰레기수거장 등 환경정비

● 기대효과

- 학교폭력 발생과 두려움이 감소하여 공동체가 신뢰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학교폭력 예방·대처 능력 신장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행 정 사 항

▷ (학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적용을 통한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교육지원청)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컨설팅 미 시어 함시오 이천 기이

8-4

학교폭력예방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학교폭력담당
☎ 210-5273

1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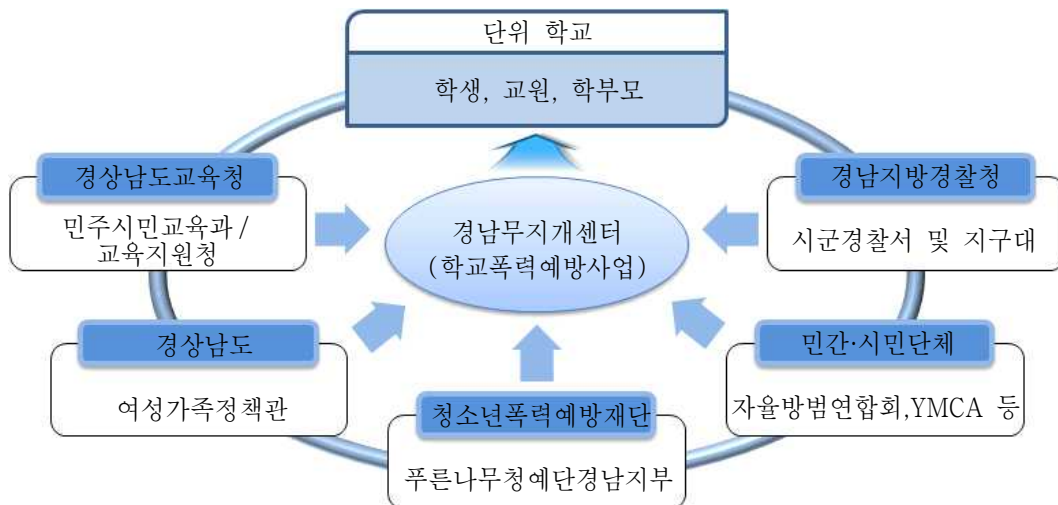
- 2022. 경남 인성교육 시행계획
- 「2022 경남교육」 2-2-4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업 강화
- 민관협업 거버넌스 경남무지개센터 운영 계획(변경)(2016.10.31.)
- 2022. 경남무지개센터 운영계획

2 추진 목적

-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적인 인성교육 활성화 추진
- 학교폭력·학교안전·학생생활 등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 여건 조성
- 학교폭력예방 여건 조성 및 협업체계 구축

3 추진 내용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개념 및 방향설정, 인성교육 목표설정, 인성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한 실행력 제고
 - 단위학교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시행(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 경남무지개센터 현장 협업 체계도



● 세부 추진 계획

- 경남무지개센터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300개 기관 이상 목표)
 - 권역별 유관기관 협의회(연 2회 이상)
- 경남무지개센터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운영
 - 학교폭력예방 경남무지개센터 유관기관 합동워크숍(2022. 6월 중)
 - 학교폭력예방 업무담당자 워크숍(2022. 12월 중)
- 학교폭력예방 홍보(연중)
 - 학교폭력예방 라디오 캠페인 제작 및 홍보
 - 학교폭력예방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뮤직비디오, 웹툰, 예방 교육 영상 자료)

● 주요활동 및 추진(협조)기관

구 분	주요업무	목표	추진(협조)부서
캠페인 및 홍보	➡ 학교폭력예방 홍보(캠페인 및 광고) ▶ 라디오 광고 ▶ 웹툰 ▶ 학교폭력예방 온라인 콘텐츠(뮤직비디오, 영상)	연중	민주시민교육과
교육활동 연수지원	➡ 기관별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연중	협업기관별
	➡ 학교폭력예방연수 ➡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폭력서클 해체 및 4대악 근절 추진 ➡ 사안처리현장점검지원단 운영	수시	교육청, 경찰청 (지역청, 직속기관) 경남지방경찰청 교육청, 청예단
	➡ 학교폭력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권역별)	연 2회	협업기관 합동
	➡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합동워크숍(도단위)	연 1회	협업기관 합동
협의회, 워크숍	➡ 학교폭력예방 업무담당자 워크숍(도단위)	연 1회	협업기관 합동

행 정 사 항

- ▷ (지원청/학교) 학교폭력예방 거버넌스(무지개센터) 구축·운영 및 홍보
- ▷ (도교육청/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홍보 자료 제작, 교육지원청 협의회 학기당 1회

시 21

8-5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업 활동

학교폭력담당
☎ 210-5273

1 추진 근거

- 2022. 경남 인성교육 시행계획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사업 2022년도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알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235(2021.9.23.)]
- 「2022 경남교육」 2-2-4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업 강화
- 2022.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지원사업 신청의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 2022. 특별교육·심리치료 운영 계획 안내

2 추진 목적

-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
- 전문가 연수를 통한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역량 강화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및 현장서비스 지원
-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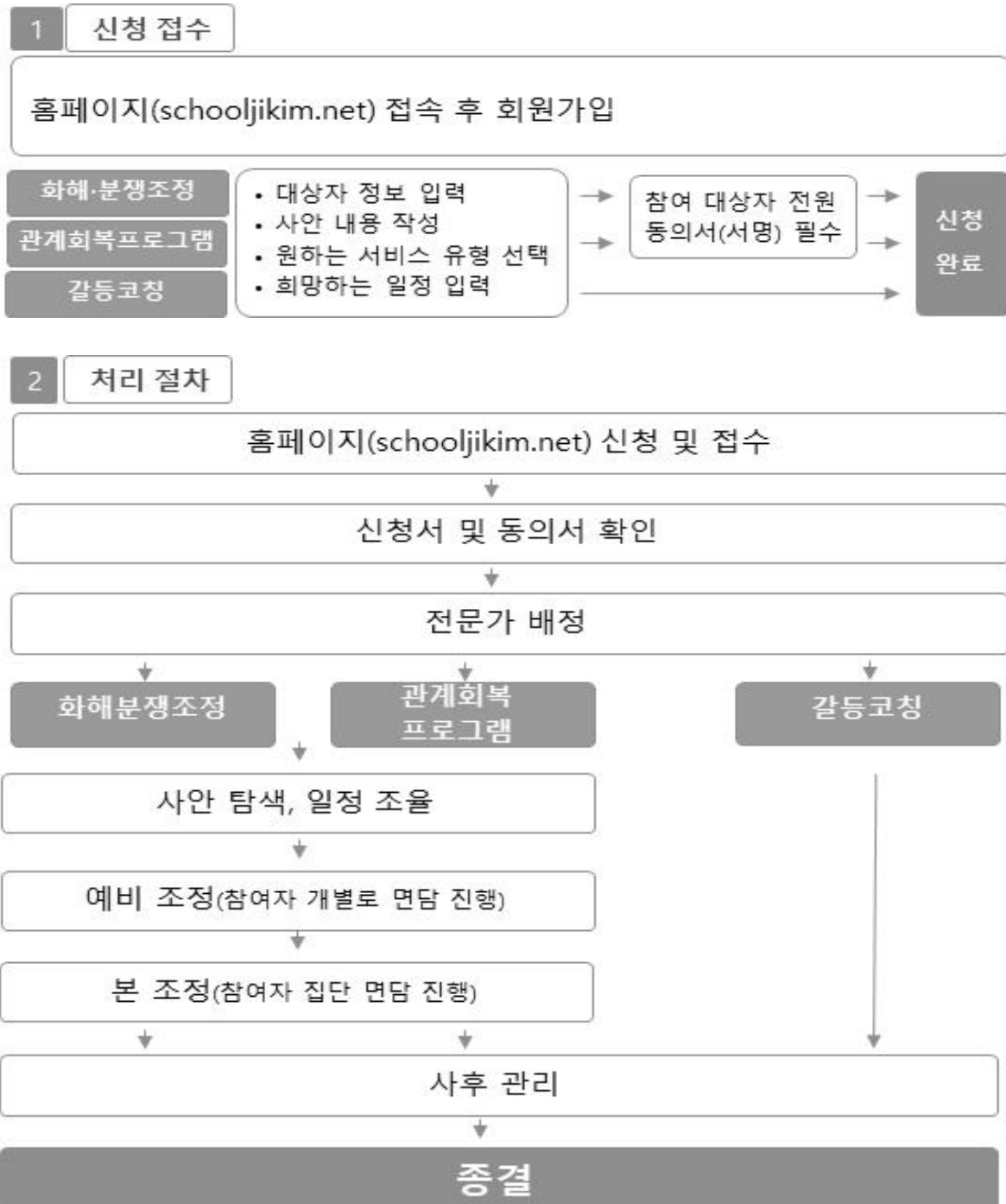
3 추진 내용

- 화해·분쟁 조정 신고 상담 기관 운영
 - 주요 운영 내용

구분				세부내용
화해 분쟁 조정 지원 사업	전국	교육 연수	전문가 연수	- 전국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대상 역량강화 연수 진행(연 1회)
			117 연수	- 전국 117 학교폭력 상담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진행(연 2회)
	위탁 지역	사례 관리	현장서비스 지원	- 화해·분쟁조정 현장서비스 진행 및 지원 - 관계회복프로그램 현장서비스 진행 및 지원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개별적 갈등코칭 현장서비스 진행 및 지원
			사례회의	- 정기적 사례회의를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사례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사후관리 및 효과성	- 배정된 사례 대상 구체적 조정 전략 지원 및 상시 진행 사항 점검 모니터링 실시 - 사업 만족도 측정 및 효과성 사전-사후 분석을 통한 조정의 성공 요인 분석
		전문가 인력 구축	- 위탁지역 내 화해·분쟁조정 민간전문가 선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리

-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홈페이지 접수 절차



I

II

III

세부
추진
계획

IV

추진목표 8

●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운영

- 특별교육·심리치료 대상

	학교폭력	학생 징계	교육활동 침해
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특별교육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부모	특별교육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특별교육·심리치료 운영 기관 현황 ※ 추후 변동 가능(운영계획 공문 참조)

연번	구분	기관명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1	Wee 클래스	Wee클래스(전 학교)		·[학교폭력]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따라 부과된(17조3항) 학생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만 의뢰 가능 ·[교육활동 침해] 제18조1항1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따라 부과된(18조3항) 학생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만 의뢰 가능 ※ 기존대로 타 기관을 통한 이수도 가능	
2	Wee 스쿨 (3)	낙동강학생교육원	720-7260~1	·학생:30(2박3일) ·보호자:6	×
3		낙동강학생교육원진산분원	760-3860~4	·중·고 여학생만 운영: 80시간(2주) 이상 중·장기 특별교육	×
4		낙동강학생교육원칠북분원	586-7956~60	·중·고 남학생만 운영: 80시간(2주) 이상 중·장기 특별교육	×
		함안군 칠북면 단대로 57			
5	Wee 센터 (18)	창원교육지원청 Wee센터	210-0461~5,7	·학생: 24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4
		[특별교육]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곡2길 3 [심리치료]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228번길 3			
6		진주교육지원청 Wee센터	740-2091~8	·학생: 20 ·보호자: 5	·학생: 8 ·보호자: 3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7		통영교육지원청 Wee센터	650-8025~7	·학생: 20 ·보호자: 5	·학생: 5 ·보호자: 2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8		사천교육지원청 Wee센터	830-1721~7	·학생:(중)25,(초)5 ·보호자: 5	·학생: 5 ·보호자: 5
		사천시 삼상로 85			
9		김해교육지원청 Wee센터	070-8767-7571	·학생:(중/고)30,(초)4 ·보호자: 5	·학생: 5 ·보호자: 5
		김해시 지내동 삼안로 24번길 7			
10		밀양교육지원청 Wee센터	350-1490~7	·학생:18 ·보호자:5	·학생:5 ·보호자:2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4			
11		거제교육지원청 Wee센터	636-9670~5	·학생: 16 ·보호자: 5	·학생: 8 ·보호자: 2
		거제시 고현동 거제중앙로13-4			

연번	구분	기관명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12		양산교육지원청 Wee센터	379-3264	·학생: 18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6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13		의령교육지원청 Wee센터	570-7131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5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2			
14		함안교육지원청 Wee센터	580-8029	·학생: 20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5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			
15		창녕교육지원청 Wee센터	530-3508~9	·학생:(중/고)15,(초)5 ·보호자: 7	·학생: 10 ·보호자: 4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16		고성교육지원청 Wee센터	673-7042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5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79번길 10			
17		남해교육지원청 Wee센터	860-4133	·학생: 15 ·보호자: 4	·학생: 10 ·보호자: 2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14			
18		하동교육지원청 Wee센터	880-1933, 1935	·학생: 15 ·보호자: 4	·학생: 10 ·보호자: 2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19		산청교육지원청 Wee센터	970-3033/7~40	·학생: 24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4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0			
20		함양교육지원청 Wee센터	960-2742	·학생: 5 ·보호자: 4	·학생: 3 ·보호자: 2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21		거창교육지원청 Wee센터	940-6191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2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22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	930-7062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3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			
23	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23)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711-1388	×	·학생: 12 ·보호자: 6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4층			
24		창원(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3900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			
25		창원(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5-7941/7925	·학생: 12 ·보호자: 10	·학생: 6 ·보호자: 5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룡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별관 2층			
26		창원(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1-2000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호			
27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749-6211	·학생: 12 ·보호자: 6	·학생: 12 ·보호자: 6
		진주시 북장대로 6번길 9, 1층(인사동)			
28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835-4199	·학생: 20 ·보호자: 6	×
		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			
29		김해시본소/서부상담소	325-2000/330-7920	·학생: 12 ·보호자: 6	·학생: 12 ·보호자: 6
		[김해본소]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 [서부소] 김해시 율하2로 210 김해서부문화센터 2층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연번	구분	기관명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30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기관 (27)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5-2000	·학생: 10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2층			
31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6-2000	·학생: 15	×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집 2층			
32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44-2000	×	·학생: 10 ·보호자: 6
		통영시 발개로 194 통영시청소년수련원 3층			
33		양산시본소/웅상분소	372-2000/367-1318	·학생: 15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5
		[양산본소] 양산시 양주3길 36 양산시청소년회관 2층 [웅상분소] 양산시 웅상대로 1009-1 웅상도서관 지하1층			
34		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0-4971~2	·학생: 20 ·보호자: 5	×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35		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3-0924	·학생: 10 ·보호자: 5	·학생: 10 ·보호자: 5
		함안군 가야읍 말산 1길 10 청소년수련관 2층			
36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2-2000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5층			
37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673-6882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12 ·보호자: 5
		고성군 고성읍 교사 4길 13 청소년문화의집 3층			
38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863-5279	·학생: 12 ·보호자: 4	·학생: 12 ·보호자: 4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39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883-3000	·학생: 12 ·보호자: 3	·학생: 12 ·보호자: 3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하동군청소년수련관 3층			
40		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970-6591	·학생: 12 ·보호자: 5	×
		산청군 산청읍 웅석북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원			
41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963-7922	·학생: 12 ·보호자: 5	·학생: 6 ·보호자: 5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42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941-2000	·학생: 12 ·보호자: 4	·학생: 10 ·보호자: 4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43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930-3906	·학생: 20 ·보호자: 5	·학생: 20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청소년문화의 집 3층			
44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기관 (27)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832-9273	·학생: 15	×
		사천시 문선4길 23			
45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286-3517	·학생: 30 ·보호자: 6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 7			
46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051)971-8502~3	·학생: 20 ·보호자: 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89번길 11			
47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052)272-5021	·학생: 35 ·보호자: 6	×

연번	구분	기관명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48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 238 달성빌딩 3층			
		거제경찰서	639-0292	·학생: 10	×
		거제시 진목1길 2 여성청소년계			
49		거창경찰서	949-0356	·학생: 10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여성청소년계			
50		고성경찰서	647-3348	·학생: 10	×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여성청소년계			
51		김해시서부경찰서	310-0163	·학생: 10	×
		김해시 계동로 175 여성청소년계			
52		김해시중부경찰서	344-8195	·학생: 10	×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여성청소년계			
53		남해경찰서	860-6247	·학생: 10	×
		남해군 화전로 89 여성청소년계			
54		마산동부경찰서	233-7242	·학생: 10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여성청소년계			
55		마산중부경찰서	240-2389	·학생: 10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 여성청소년계			
56		밀양경찰서	350-0358	·학생: 10	×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여성청소년계			
57		사천경찰서	850-7117	·학생: 10	×
		사천시 남일로 37 여성청소년계			
58		산청경찰서	970-3259	·학생: 10	×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1 여성청소년계			
59		양산경찰서	392-0082	·학생: 10	×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여성청소년계(4층)			
60		의령경찰서	570-0345	·학생: 10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 여성청소년계			
61		진주경찰서	750-0272	·학생: 10	×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여성청소년계			
62		진해경찰서	549-8143	·학생: 10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여성청소년계			
63		창녕경찰서	520-9255	·학생: 10	×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 여성청소년계			
64		창원서부경찰서	290-0209	·학생: 10	×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 여성청소년계			
65		창원중부경찰서	233-0114	·학생: 10	×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연번	구분	기관명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여성청소년계			
66		통영경찰서	640-0149	·학생: 10	×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 여성청소년계			
67		하동경찰서	880-3119	·학생: 10	×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여성청소년계			
68		함안경찰서	589-8347	·학생: 10	×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 여성청소년계			
69		함양경찰서	960-1347	·학생: 10	×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 여성청소년계			
70		합천경찰서	930-6199	·학생: 10	×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여성청소년계			
71		민간 단체 위탁 기관 (18)	푸른나무청예단 경남지부	263-1388	·학생: 30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번길 31 5층(도계동, 경도빌딩)		·보호자: 10	·보호자: 6	
72	다운심리상담센터		264-3343	·학생: 30	·학생: 10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3번길 28 우영프라자 521호		·보호자: 5	·보호자: 5	
73	김해교육문화연구소		336-1027	·학생: 30	·학생: 10
	김해시 내외중앙로 50 정우센터빌딩 801호		·보호자: 10	·보호자: 5	
74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		331-0505	·학생: 60	·학생: 60
	김해시 김해대로 2421 2층		·보호자: 30	·보호자: 30	
75	한국통합TA연구소		312-1242	×	·학생: 20
	김해시 활천로 233 더블리안 402호		·보호자: 6		
76	(사)한국청소년문화원		387-6824	·학생: 30	·학생: 10
	양산시 덕명로 322, 상가동 4층		·보호자: 5	·보호자: 6	
77	푸른나무 청예단 진주사천지부		748-0388	·학생: 30	·학생: 20
	진주시 진양호로 341		·보호자: 10	·보호자: 20	
78	심리상담센터 본		642-4690	·학생: 30	·학생: 20
	통영시 달포큰길 70 2층		·보호자: 10	·보호자: 6	
79	두리심리상담연구소		010-3122-5027	·학생: 30	·학생: 20
	통영시 용남면 화포1길 66		·보호자: 10	·보호자: 6	
80	인제대학교 금연교육연구소		325-3319	·학생: 30	×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D동 탐진관 307-1호				
81	마산 YMCA		251-4837	·학생: 30	×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지밭골2길 7		·보호자: 30		
82	해오름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746-1078	×	·학생: 30
	진주시 진양호로 467 3층		·보호자: 10		
83			미샘 심리상담센터	387-7926	·학생: 18 ·보호자: 6

연번	구분	기관명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84		양산시 금오13길 4			
		더 홈 심리상담센터	362-4424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40 ·보호자: 10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17			
85		한국심리지원협회	688-4842	·학생: 40 ·보호자: 10	·학생: 40 ·보호자: 10
		거제시 옥포대첩로 48 2층 거제시 아주1로 3길 7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342-6867	·학생: 15 ·보호자: 15	·학생: 15 ·보호자: 15
86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78(경남단감농협 금병지점 2층)			
		다올 심리상담센터	010-4711-4326	·학생: 30 ·보호자: 10	·학생: 30 ·보호자: 10
		김해시 전하로 304번길 11 성벽빌딩 304호			
87		한국다인상담교육센터	325-8383	·학생: 20 ·보호자: 20	·학생: 10 ·보호자: 10
		김해시 구지로 11 201호			
특별교육 운영 기관 수 / 심리치료 운영 기관 수				83	51

행 정 사 항

- ▷ (지원청/학교) 특별교육 이수 학생 발생 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이수 신청서 제출
- ▷ (도교육청/지원청) 학기별 이수 현황 제출-2022. 8. 27.-1차, 2023. 2. 25.-2차



존중과 배려의 생명존중교육 강화

- 9-1. Wee프로젝트 운영 및 컨설팅
- 9-2. 학생 도박 예방 활동 강화
- 9-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추진목표 9



존중과 배려의 생명존중교육 강화

9-1

Wee프로젝트 운영 및 컨설팅

대안치유담당
☎ 210-5263

1 추진 근거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2022. 위(Wee)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내부결재)

2 추진 목적

- 정서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학습무기력, 따돌림, 비행 등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운영
- 위기유형에 따른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통한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 다양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통해 긍정적 자아형성과 학교적응력 향상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3 추진 내용

- Wee 프로젝트의 개념

-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
- 「Wee Project」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새 시대의 학생 생활지도 전략
- 「Wee Project」는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3단계 safe-net 구축 사업

- Wee 프로젝트의 역할 및 기능

Wee
클래스
(1차)

- 단위학교 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배치
- 개인상담/집단상담/학생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잠재적 위기학생에 대한 초기 진단 및 대처
- Wee 센터(혹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뢰 및 연계

Wee센터 (2차)	• <u>교육지원청 내 학생상담지원센터</u> 설치 •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료 One-Stop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문제해결 지원 •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자문 서비스 제공
Wee스쿨 (3차)	• <u>교육청 직속기관의 기숙형 장기위탁교육기관</u> 설치 • 교과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팀 배치 •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료 및 교육지원 •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Wee클래스 역할

역할	활동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u>상담지원</u> , <u>자문</u>
교육	또래상담자 교육, 상담관련 교육 및 연수(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행사
연계	Wee센터 및 Wee스쿨 연계,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교내 구성원 간 협력
행정	<u>상담환경 조성</u> , <u>연간계획 수립</u> , 홍보, <u>사례관리 및 평가</u>
기타	전문성 강화(역량강화연수, <u>수퍼비전</u> 등), <u>컨설팅</u>

● Wee클래스 학생상담의 일반적 과정

상담과정	내용
신청 또는 의뢰 ↓	» 학생 상담신청 및 동의, 교사 및 학부모 상담의뢰 및 동의
접수면접 ↓	» 호소문제 파악, 상담전략 수립을 위한 면접 등
심리검사 ↓	» (필요시) 심리검사 진행(성격, 지능, 정서 등)
개입/상담 ↓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담임 및 교과교사 협조 등
사후평가/종결 ↓	» 담임교사 및 학부모 협의
추후관리	» 지속적 행동관찰 및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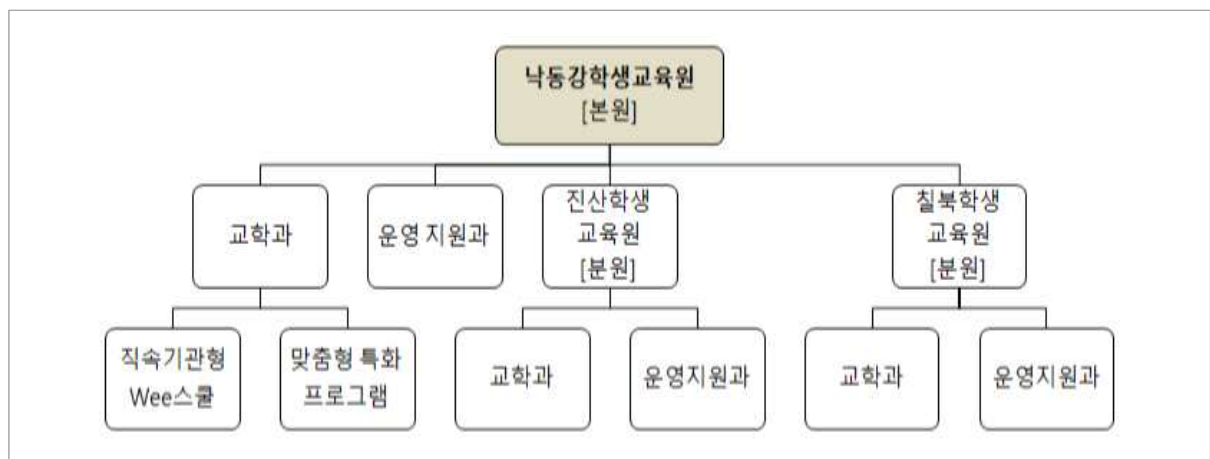
※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예외사항, 상담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에 대한 약속은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을 권장

● Wee센터 학생상담의 일반적 과정

상담과정	내용
신청 또는 의뢰 ↓	≫ 학생 신청 및 동의, 학교 및 외부기관의 의뢰 및 동의 등
사례분류 ↓	≫ 주 사례담당자 배정
접수면접/심리검사 ↓	≫ 학생이해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스크리닝 검사 실시
상담 교육 또는 프로그램 연계 ↓	≫ 개인상담, 집단상담, 특별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심리검사 ↓	≫ 성격/정서/지능/행동평가 등
치료 ↓	≫ 심리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등)
사후평가/종결 ↓	≫ 학교(담임교사) 및 학부모 사후 협의 등
추후관리	≫ 멘토링

※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예외사항, 상담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에 대한 약속은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활동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실시

● Wee스쿨 조직체계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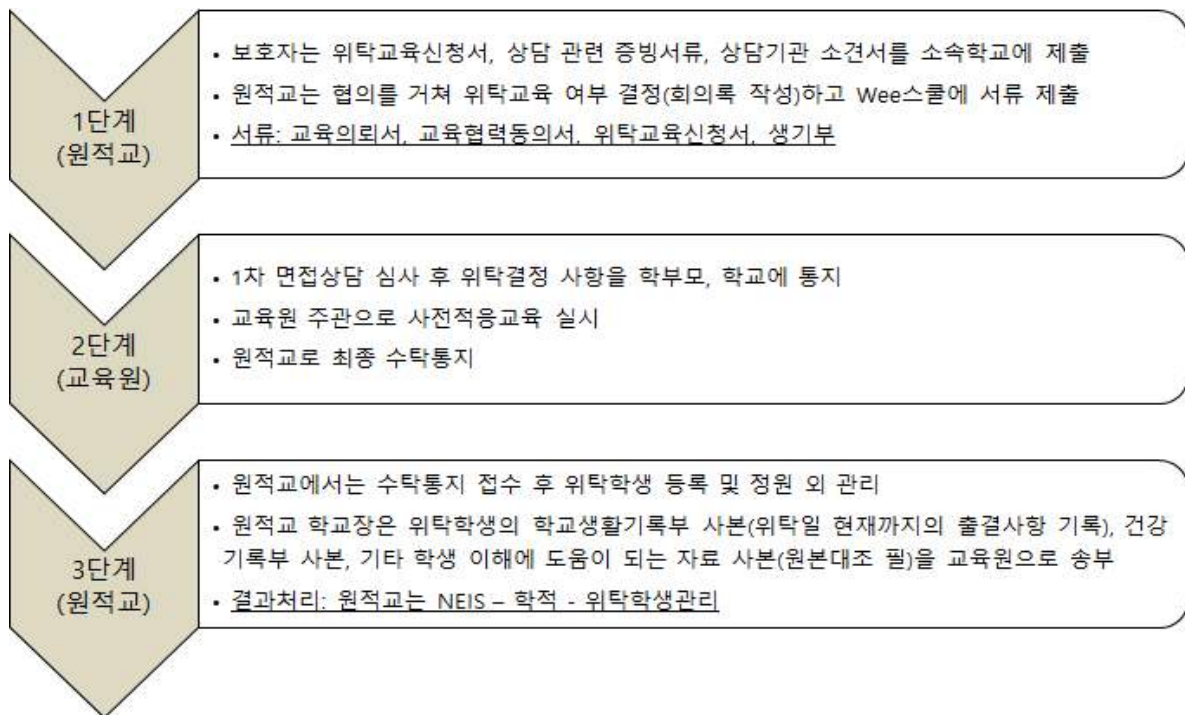
● Wee스쿨 역할

역할	활동
상담	중·장기간 심리상담과 고위험군 대상 치료연계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교육	교과융합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진
방과후	꿈·끼·적성을 고려하여 흥미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적응	공동체사회,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도움단기 환경 마련
추후관리	학교 적응도, 진학을 평가 및 관리

● Wee스쿨 기관별 운영과정

기관	대상	운영과정	비고
낙동강학생교육원(본원)	중·고	1년 ~ 2년 장기위탁과정,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4개반
진산학생교육원(분원)	중·고(여)	2주 이상 ~ 18주 이하의 중·단기 위탁교육과정	2개반
칠북학생교육원(분원)	중·고(남)	2주 이상 ~ 18주 이하의 중·단기 위탁교육과정	2개반

● Wee스쿨 위탁 신청 절차



● Wee스쿨 운영프로그램

주제	구분	활동
대안(교과융합) 교육	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음악, 미술 등
	예술교육	미술치료, 생활공예, 바리스타, 음악치료, 제과제빵, 감성치유
	회복교육	트레킹, 생활체육, 자연체험활동
	표현공유	DIY공작, 상상바느질, 푸드테라피, 말글놀이, 과학창작, 메이커기술
	별빛모임	감사일기, 인성교육, 감성교육
상담	영적성장	개인상담, 집단상담, 공감소통, 갈등해결
	나눔치유	모래놀이치유, 놀이치유, 뉴로피드백
체험활동	동아리	명상 및 걷기
	봉사	교육원과 MOU체결 기관, 원내 봉사활동
	진로	진로체험인턴십(LTI)
프로그램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 및 교권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예방	중독(흡연, 도박 등)예방,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자살예방 등
	가족	가족힐링캠프
	적응	원적교적응주간, 원적교교사연수
추수지도	추수지도	위탁교육 종료 후 학생들의 지속적이 변화가능성 격려

● 2022. 경남교육청 교육지원청 Wee센터 현황

지역	전화번호	주소
창원	055-210-0461~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3 후관 1층 창원교육지원청Wee센터
마산분원	055-250-7611~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곡2길 3 마산교육지원센터 2층 창원Wee센터 마산분원
진주	055-740-2091~8	경남 진주시 비봉로23번길 8 진주교육지원청 4층 Wee센터
통영	055-650-8025~7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통영교육지원청 Wee센터
사천	055-830-1544~9	경남 사천시 삼상로85 사천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김해	070-8767-7571~7	경남 김해시 삼안로24번길 7 활천초등학교 서관 4층 김해Wee센터
밀양	055-350-1490~7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밀양대로 1524-1번지 영재교육원 1층 밀양Wee센터
거제	055-636-9670~5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9길 13-4 거제교육지원청 Wee센터
양산	055-379-3261~9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53 양산교육지원청 2층 Wee센터
의령	055-570-7136~9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2 의령교육지원청 Wee센터
함안	055-580-8015~8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 함안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창녕	055-530-3505~9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창녕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고성	055-673-380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79번길 10 고성교육지원청 Wee센터
남해	055-860-4144~6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14 남해교육지원청 Wee센터
하동	055-880-1945~6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하동교육지원청 1층 Wee센터
산청	055-970-3037~40	경남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10 산청교육지원청 Wee센터
함양	055-960-2723~7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함양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거창	055-940-6191~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거창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합천	055-930-7061~4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150 합천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9-2

학생 도박 예방 활동 강화

대안치유담당
☎ 210-5264

1 추진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665호, 2019.10.31, 개정]

2 추진 목적

-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 도박 등 학생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 및 확산 방지
-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기르기

3 추진 내용

- 학생도박예방 담당교사 온라인 전달연수 실시
 - 시기 및 대상: 2022.3. ~ 2022. 12. 담당 교원
 - 내용: 학생 도박문제의 이해, 초등 도박예방교육의 실제, 중등 도박예방교육의 실제
-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 시기 및 대상: 3월~12월, 초·중·고 희망학교(학생, 교직원, 학부모)
 - 강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전문 강사단
- 도박예방 선도학교
 - 시기 및 대상: 2022.3. ~ 2022. 12. 초·중·고 중 5개교 선정
 - 내용: 도박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캠페인 등 도박 예방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도박예방 공모전
 - 시기 및 대상: 2022.3. ~ 2022. 12. 전 초·중·고등학생
 - 내용: 학생 참여형 도박예방 공모전 실시
- 도박문제 학생 관리 및 전문기관 연계 체제 구축
 - 경상남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운영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와 협력·연계 운영
 - 전문기관과 협력 지원(학생도 중독검사→검사결과 통보→고위험군 개인/집단상담→전문가 치유재활 개입→도박 중독 회복)

행 정 사 항

▷ 중대 사안 발생시: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동시 보고

I

II

III

세
부
추
진
계
획

IV

9-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대안치유담당
☎ 210-5264

1 추진 근거

- 「2022 경남교육」 2-2-5. 존중과 배려의 생명존중교육 강화
- 2022. 학생자살예방 계획(내부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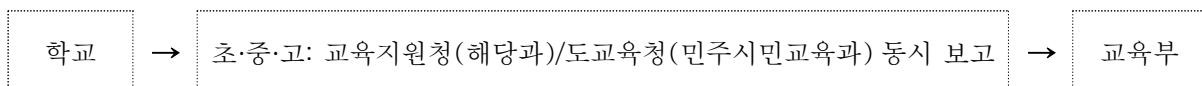
2 추진 목적

- 학교 자살률 감축으로 행복교육 기반 마련

3 추진 내용

- 학생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 강화
 - 도덕·사회·보건 등 관련 교과교육과정 및 창체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학교)
 - ※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연간 6시간 이상 실시(교과교육과정 연계)
 - 신학기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생명존중 교육 집중 실시를 통한 학교환경 적응성이 향상될 수 있는 학교 내 지지체계 마련(학교)
- 학생 자해예방 및 대응 강화
 - ‘학생 자해대응 교사용 안내서’ 활용을 통한 교사의 자해사안 대처능력 제고 및 학교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한 보완 등을 통한 학교 내 대응 체계 구축·확산
 - 학부모·교사용 뉴스레터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학부모 및 교사의 올바른 자해 대처 능력제고(연 10회)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 통해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자문,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 강화
- 교직원의 자살(자해)예방 전문성 강화
 - 교직원 자살예방교육(게이트키퍼 교육 포함) 실시*
 - * 실시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 교육부 개발 교사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괜찮니 톡톡톡’ 활용(민주시민교육과 게시판 탑재,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자료실 동영상 자료 탑재)
 - 교원 게이트키퍼 전문인력(강사) 양성을 통한 새로 보완된 게이트키퍼 교육프로그램 연수 지원(’21 ~. 예정)
 -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직원 지원 강화
 - 학생자살(자해)예방 관리를 위한 교원용 매뉴얼(리플렛) 보급

- 교직원 및 학생 자살(자해)예방 연수 운영
 - 교직원 대상 자살예방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실시
 - 15차시, 경남교육청연수원, 원격, 연중
 - 마음의 SOS(학생 자살과 자해 편)(10차시, 경남교육청연수원, 원격, 연중)
- 생명존중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 학기 초(4월, 9월) 및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전·후에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사랑 교육주간 등을 실시
- [교육지원청]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관련 대책 수립 및 교육지원청 추진체계 정비('20. 2월)
 - 학생자살 사전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신속·적법한 대응 등 위기관리체계 확립·추진
 - ※ 학교응급심리지원팀(교육지원청 Wee센터)을 반드시 구성
 - 자살예방교육, 자살사안처리, 사후위기관리지원(애도교육, 심리치료 등)의 체계적·실질적 추진
 - 학생자살사안 발생 시, 해당 학교 방문·학교응급심리지원
- (단위학교)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 교육과정 연계한 자살예방교육 연간 6시간 확대 실시('21년)
 - 모바일기반 위기문자 상담체계(다 들어줄 개) 운영 홍보 안내
 - 매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추진
 - 학교 내 관련 부서 및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예방관리 체계 확립
 - 학기 초(4월, 9월) 및 자살예방의날 전·후에 자살예방 주간 실시 권장
 - 학교 위기관리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지역사회 기반의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교직원이 예방 및 위기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 교감, 전담기구(학교 내·외 전문자원 포함), 담임교사, 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자살 시도 및 자살 사망학생 발생 시 반드시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활동 역량강화
 - 학부모 대상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연수운영(교육과정 설명회 등 기타 행사와 병행 운영)
- 학생자살 및 자살시도자 발생 보고
 - 학생자살 및 학생자살시도자 발생 보고 체계(24시간)



- 보고사항

- ① 학생자살 사안 경위서 요약(학교장경위서포함)
- ②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
- ③ 학생자살(시도)사안 보고서

- 보고방법

- ① 1차 유선보고: 인지 즉시 도교육청 ☎210-5264, 010-4920-2619로
- ② 2차 자살(사망, 시도)사안 경위서 제출(24시간 이내)
학생자살(사망, 시도)사안 경위서
교육지원청(해당과) 및 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공문 제출
- ③ 3차 자살(사망, 시도)사안 보고서 제출(5일 이내)
자살사망사안보고서, 자살시도사안보고서 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공문 제출
※ 공문(비공개 6호설정, 직원열람제한 영구 체크)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보고 서식

- 2021. 학생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 강화 추진 계획 참고
- 본 자료집 부록(각종 서식) 참고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10-1.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 10-2.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강화
- 10-3. 법정 (성)폭력예방통합교육
- 10-4. 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성교육 사안처리
- 10-5.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

추진목표
10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10-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성인식개선담당
☎ 210-5292

1 추진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조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추진 목적

-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 내실화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교육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능력 함양

3 추진 내용

- 2022년 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근거하여 관련 교과 연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과정 편성·운영
 -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 초등학교: 성폭력 1시간, 가정폭력 1시간, 양성평등교육 2시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 포함
 - 중·고등학교: 성폭력 1시간, 가정폭력 1시간, 양성평등교육 2시간, 성매매 1시간,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1시간 포함
 - 성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5차시 집중 교육
 - (관계, 경계존중, 동의) 개념 2시간, 젠더 이해 1시간, 인간의 신체와 발달 1시간,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1시간을 성교육 15차시 내에서 별도 실시

- 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단위학교의 성교육 업무 담당교사 지정 운영(업무 분장표 표기)
 - 성교육 수업 담당교사 중심으로 관련 교사 협의회 구성
-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국가 성교육 표준안 및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내용 체계를 준수한 성교육 실시
 -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체험중심의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유관기관 연계) 권장
 - 주제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 달성으로 실질적인 교육
-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성교육 표준안」 및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적용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 기존의 성교육 자료를 선별, 분류하여 탑재한 「슬기로운 학교생활」 참조
 - 참조: 유네스코 「국제성교육 가이드(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2018년 개정판 (온라인 공개자료)
- 경상남도 학교 성교육자문위원회 운영
 - 도교육청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등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활동 지원
 - 연중 1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실시
- 단위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컨설팅 실시
 - 단위학교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컨설팅 확대 실시
 - 초·중·고등학교 110개교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실시를 통한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모니터링 및 지원 방안 모색
- 범교과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 범교과 성교육 인식개선 관리자 연수
 - 전 학교 관리자 대상 3차시 연수 진행
 - 범교과 성교육 수업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 마음 성교육, 공동체살이 성교육으로 나누어 15차시, 360명 연수

행 정 사 항

- ▷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자체 점검표 작성 및 컨설팅 자료 제출
- ▷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컨설팅 실시
- ▷ (도교육청)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고등학교 컨설팅 실시
- ▷ (교육연수원) 성교육 관련 강좌 개설

참고자료 1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내용체계(초·중·고) 참조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인간발달	- 서로 다른 성 - 생명의 소중함 - 몸의 구조와 성장 - 남녀의 생활	- 아름다운 성 - 생명의 탄생 발달 - 남녀의 신체 변화 - 남녀의 성과 심리 특성	- 사춘기의 성 - 남녀 생식기관의 이해 - 수정과 태아의 발달 - 출산과정 이해 - 사춘기의 신체변화와 대처 - 사춘기의 심리변화와 대처	- 청소년과 성 - 생식기관과 2차 성징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체 이미지 - 청소년기의 성 심리 -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 인간의 삶과 성 - 인간의 성 심리 - 생애 주기에 따른 성의 변화 - 인간의 신체상과 성의식 - 출산과 부모 되기 준비
인간관계	- 가족 구성원의 성 - 가족에 대한 성 - 예절의 성 - 이성 친구와 지내기 - 결혼의 의미와 나	- 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중요성 - 내가 꿈꾸는 결혼과 부모의 역할 - 이성 친구와의 갈등과 언어 사용 - 놀이에서 이성 친구 간 지켜야 할 예절	- 건강한 이성 친구 -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조건	- 사랑의 가치와 유형 - 바람직한 이성교제 -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	- 자녀양육과 부모의 역할 - 건강한 이성교제와 예절 - 배우자의 선택과 이성관
대처기술	- 동·이성간 올바른 의사결정 - 동·이성간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 결정 - 이성 친구에게 의사표현 하기	- 성적 행동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 - 이성 친구와의 의사소통 - 위험상황에서의 도움 - 도움 요청하기	- 다양한 의사소통 나 메시지 - 전달법으로 대화 - 나누기 상황에 맞는 거절과 도움 요청	- 성적 의사결정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조건과 방법 - 성에 대한 - 자기주장과 거절 방법 - 성 문제로 인한 위기관리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 합리적 의사결정 - 성에 대한 책무성 - 이성과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 효과적인 거절 방법 - 성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와 옹호
성행동	-	-	-	- 남녀의 성 인식의 차이 이해 - 성 욕구의 조절	- 성관계와 임신의 책무성 - 성욕과 성 욕구의 해소성기능 부진의 이해 - 건강한 성생활의 조건
성건강	생식기의 청결한 관리와 옷차림	남녀 생식기의 위생과 관리	- 사춘기 생리 현상의 이해와 건강관리 - 에이즈의 감염과 예방	- 생식기 건강과 태아 임신과 출산 - 신생아 관리 - 피임의 종류와 방법 - 성매개 감염병의 종류와 예방 - HIV와 AIDS	- 생식기의 질병과 건강관리 - 성매개 감염병의 종류와 대처 - 피임법의 선택 - 인공임신중절 - 신생아 돌보기
사회와문화	- 아는 사람의 성적 강요 행동과 언어 - 성폭력의 의미와 대처법 - 성역할과 양성평등 - 인터넷의 편리성과 위험성 - 대중매체와 성 - 사진 속 음란물	- 타인의 성적 강요 행동 - 성폭력의 의미와 예방 행동 - 인터넷을 이용한 성폭력의 대처 - 성차별 없는 사회 - 영상에 나타난 음란물 - 대중매체와 성문화	- 가족과 친척의 성적 강요 행동 - 성폭력의 상황별 예방과 대처 - 또래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성 차이와 성 차별의 이해 - SNS의 편리성과 위험성 - 대중매체의 잘못된 성 광고 - 인터넷에 나타난 음란물	-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성폭력 예방과 대처 -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 문제 분석 - 음란물의 영향과 대처 - 성매매의 이해 - 성매매 방지법	-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 데이트 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 예술과 외설 -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실태, 원인, 대처법 - 성관련 법률의 이해

참고자료 2

성교육 표준안 운영 모형

구분	교과통합형	전담형	초빙형	융합형
특징	• 관련교과 담당교사와 보건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성교육 실시 • 교과관련 내용에 맞춰 시간 확보 • 교과관련성이 없는 시간은 창체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보건 또는 관련 전문교사가 지도	•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성교육을 실시 • 11학급 이하의 학교 규모에서만 활용이 가능함 •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성교육을 위한 시수를 배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 보건교사와 외부전문가 또는 보건교사와 기간제 교사(보건)를 활용하여 성교육 실시 • 성교육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운영 •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통합형, 전담형, 초빙형을 학년단위로 선택적으로 구성
지도 교사	• 관련교과 담당교사 <관련교과> - 초등(저): 통합, 국어, 보건 - 초등(중): 도덕, 국어, 체육, 보건 - 초등(고): 도덕, 국어, 체육, 실과, 과학, 보건 - 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체육, 기술가정, 보건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보건	•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전담하여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담임교사의 보조적 역할	• 보건교사와 외부전문가 초빙 - 외부의 관련단체로부터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에서 성교육 실시 • 보건교사와 기간제 교사 - 12학급 이상의 규모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2개월 이상) 운영하는 방법 - 학교의 규모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연장채용 가능	• 관련교과 담당교사, 보건교사, 외부전문가, 기간제 교사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인적자원
담당 시간 수	<학교급별 교과별 담당시수> - 초등(저): 통합(18), 국어(7) - 초등(중): 도덕(13), 국어(7), 체육(2) - 초등(고): 체육(5), 과학(1), 실과(7), 도덕(4), 국어(1) - 중학교: 기술가정(7), 도덕(3), 사회(2), 과학(3), 체육(2), 보건(8), 기타(5) - 고등학교: 보건(10), 생활과 윤리(13), 기술가정(7)	- 보건교사 1명이 담당 가능한 수업시간: 주당 5.5시간×30주=165시간 - 연간 배정된 15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1학급까지 담당이 가능함	- 기간제교사 2개월 채용시 : 주당 15시간×8주=120시간이므로 연간 15시간 확보를 기준으로 8학급까지 기간제 교사가 담당 가능 - 정규 보건교사 담당 시간 : 11학급까지 가능 - 이 유형을 활용할 경우 기간제 교사 한 명 채용시 총 19학급까지 운영이 가능함	• 학년단위로 가능한 시수를 구성하여 운영 • 교과 담당교사, 보건교사, 외부 전문가, 기간제 교사 등 필요에 따라 운영 가능한 시수를 배정
장점	• 전 교직원이 성교육에 동참하게 되어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교사들의 성교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증대됨 • 보건교사의 수업부담을 감소시켜 건강관리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음	•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성교육에 대한 계열성이 확보되어 체계적인 성교육이 가능함	•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함 • 체계적인 성교육이 가능함 • 보건교사의 수업부담이 감소되어 학생들의 건강관리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음	• 성교육을 위한 모든 구성원의 동참으로 성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도움 • 성교육에 대한 지역인사의 참여로 지역사회와의 자원 활용과 연계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단점	•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의 참여 문제 발생 • 교과별 지도시기의 차이로 성교육에 대한 계열성이 무너질 수 있음	• 보건교사에게 배당되는 수업이 가중되어 학생들의 건강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 • 학교 규모가 큰 대규모 학교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	• 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가치의 도입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성교육에 대한 주인의식의 결여

10-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강화

성인식개선담당
☎ 210-5292

1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교육부, 22. 1월)
- 2022.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추진 계획

2 추진 목적

-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 모두가 성적 불평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가 양성평등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는 학교 문화조성
- 통합적 인권교육의 차원에서 인간 존중 및 남녀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추진

3 추진 내용

- 2022년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수립
 -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문화 구축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젠더 갈등 해월에 회복적 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원리 적용
 - 젠더이해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현장지원단 양성 연수 실시
 - 양성평등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양성평등 주간 운영
 - 학교 내 젠더이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권장
 - 양성평등교육 보드 자료 전시 행사 개최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고취
-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사업
 -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 교육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젠더이해 기반 양성평등 교육
 - 중·고등학교 1,450학급으로 확대 시행
 - 찾아가는 교직원 성인지교육 운영(교직원 대상)
 - 4대폭력예방교육 중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2시간 실시
 -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200교 시행
 - 찾아가는 학부모 성인지교육 운영(학부모(보호자) 대상)
 - 농산어촌 등 도서벽지 지역의 학부모 대상 성인지교육 2차시 운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보호자 대상 50교 시행

- 자체점검 기준표를 활용한 학교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학교별 자체 점검 실시
 - 양성평등 현장지원단을 활용한 학교별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컨설팅 실시
 -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진단 역량 강화 및 젠더이해에 기반한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정착
- 학생 자치활동 중심의 양성평등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 중·고등학교 10개교
 - 젠더이해를 위한 학생 자치활동 지원
- 양성평등 선도학교 운영(2개교)
 - 양성평등교육 교재의 현장 적용 및 학교별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적용
 - 초·중·고등학교 대상 2교 공모를 통한 선정 및 운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프로그램교재, 콘텐츠 등 지원
- 양성평등 유공 교원에 대한 표창(장관 및 교육감 표창)

[양성평등 자체점검 기준표]

대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여	부
1.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와 인프라	1. 학교규칙과 학생생활 규정에서의 양성평등	1. 성차별적 규정 개선 여부 또는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규칙 제정 여부		
		2. 학생회 등 학생 의견을 청취하여 성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양성평등 규정을 제정한 경우		
	2. 양성평등 학교 운영 현황 조사 및 개선 조치	3. 학교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 실시 여부		
		4.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조치 여부		
	3. 양성평등한 학교시설 및 환경 구축	5. 남녀비율에 따른 화장실 변기 설치(남녀 화장실 비율 1: 1.5)		
		6. 탈의실 설치 여부		
2. 체계적인 양성평등 교육 운영	4. 학교 교육목표에서 양성평등	7. 양성평등 교육목표 수립 여부		
		8. 학교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양성평등 교육활동 계획 수립 여부		
	5. 양성평등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9.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인력 배치 여부		
		10.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여부		
	6. 양성평등 교육 활동 실적	11. 교과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적 여부		
		12. 비교과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적 여부		
	7. 학생의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13. 학생대상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실시 여부		
3.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8. 교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14. 교직원의 양성평등교육·연수 참여 여부		
	9.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15.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연수 참여 여부		

행 정 사 항

▷ (학교) 2022. 젠더이해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수립. 양성평등 자체점검 기준표 작성, 양성평등주간 운영

▷ (교육지원청) 양성평등 보드 자료 대여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교육지원청) 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양성평등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0-

법정 (성)폭력예방통합교육

성인식개선담당
☎ 210-5296

1 추진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진흥조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예방 강화 기본 계획
-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교육부, 21. 2월)

2 추진 목적

-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문화 개선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교직원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사안의 엄중한 관리로 건강한 학교 성문화 조성 및 교직원의 도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요구 부합

3 추진 내용

- 법정 (성)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 2022년 법정 (성)폭력예방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건전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체험중심의 성교육 및 폭력예방통합교육(유관기관 연계)
 - 교육시간 및 분야
 -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 내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이상 실시, 성인지교육 1시간 이상 실시
 -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 가능
 -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 신종 폭력 포함 가능
 - 교직원 5시간 이상(성인지 교육 1시간+기존 법정 폭력예방교육 4시간)
 - 초등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 중학생·고등학생: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 교육 대상
 - 기관에 소속된 전직원(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 포함)
 -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하며,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는 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미포함
- 교육 기간: 2022.1.1. ~ 12.31.
- 교육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학교) 특성에 맞게 실시
 - 내실화있는 교육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내 전문강사 बैं크를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적극 권장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 권장
- 실적 제출
 - 2023년 2월말까지 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을 통해 제출
 - 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은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 기관 유형별 적용 대상 폭력 예방교육 및 실적 점검 기준표

기관 유형	의무 (성)폭력 예방통합교육			
	학생	실적 점검 기준표	교직원	실적 점검 기준표
초등학교	성폭력, 가정폭력	B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A
중·고등학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B		
유치원, 어린이집	성폭력	C		

● 후속 조치

- 부진기관 관리
 -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
 -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되며, 금융상품 판촉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인정함
 - 부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부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부진기관 기준

구분	세부 기준
각급 학교(초·중·고)	① 실적 미제출 및 허위 제출 ②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③ 기관장 교육 미이수 ④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⑤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⑥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
유치원, 어린이집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원장 교육 미이수

행 정 사 항

- ▷ (학교) (성)폭력예방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 (성)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공공기관 폭력예방통합교육 실적제출(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활용) 및
- ▷ (도교육청) 법정 (성)폭력예방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
- ▷ (교육연수원) 법정 (성)폭력예방통합교육 관련 강좌 개설

□ 2022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실적 점검 기준표(A) - 일반용>

유형	평가항목		2022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 부진기관 (0)
		고위직	25	90% 이상 (25)
				70~90% 미만 (15)
				50~70% 미만 * 부진기관 (5)
				50% 미만 * 부진기관 (0)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
				80~90% 미만 (25)
				70~80% 미만 * 75%미만 부진기관 (20)
				60~70% 미만 * 부진기관 (15)
				50~60% 미만 * 부진기관 (10)
				50% 미만 * 부진기관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대상별 추가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5)
합계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기준:

- (대상기관 공통) 합계 70점 미만, 종사자 참여율 75%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미만
※ 종사자 참여율 부진 기준 단계적 상향: ('22) 75% → ('23) 80%

- 22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 공표(『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1.10.21일 시행)

□ 2022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실적 점검 기준표(B) - 학생 포함용>

유형	평가항목		2022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 부진기관 0
		고위직	15	90% 이상 (15)
				70~90% 미만 (10)
				50~70% 미만 * 부진기관 5
				50% 미만 * 부진기관 0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 75%미만 부진기관 0
				60~70% 미만 * 부진기관 10
				50~60% 미만 * 부진기관 8
				50% 미만 * 부진기관 6
		학생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11)
				50~60% 미만 (8)
				50% 미만(대학만해당) 5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6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X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3	의무화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초,중,고)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5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5
	(대학교)학생참여율 70% 이상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확인 5
	대상별 추가교육 실시		2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2)
합계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기준 :

- (대상기관 공통) 합계 70점 미만, **종사자 참여율 75%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미만
- **22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2022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실적 점검 기준표(C) - 유치원, 어린이집용>

유형	평가항목		2022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원장)	10	이수 (10)
				미이수 * 부진기관 0
		종사자 (기관장,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55*) *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80~90% 미만 (27/49*)
				70~80% 미만 (24/43*)
				60~70% 미만 (21/37*)
				50~60% 미만 (18/31*)
				50% 미만 (15/25*)
		학생 (원생)	25	90% 이상 (25)
				80~90% 미만 (22)
				70~80% 미만 (19)
				60~70% 미만 (16)
				50~60% 미만 (13)
				50% 미만 (1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6
가점 (20)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10	사용 (10)
	학부모 교육 실시		10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10)
합계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원장) 교육 미이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10-

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성인식개선담당
☎ 210-5295

1 추진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2020. 9.)

2 추진 목적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및 대응력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안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피신고인 조사

3 추진 내용

- 사안발생 시 교육지원청 사안처리지원단은 단위학교와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도교육청 성인식개선담당-교육지원청별 성사안처리지원단-학교 성사안전문가참여조사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안처리 진행
 - 피해자 보호조치(공간분리, 의료·법률 지원연계)방안 마련
 - 성희롱·성폭력방지조치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사안 발생 시 대응 기반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 사안처리 이후 학교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
- 교육지원청은 외부 성사안전문가 인력풀 제공
 -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발생 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안내 및 예산 지원
 - 학교에서는 사안발생 시, 성사안전문가참여조사단을 내부인력(성고충업무담당, 학교폭력업무담당 등) 및 외부인력(성사안전문가: 성폭력상담소장,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인력의 경우는 일정 비율(동조사단의 50% 또는 1인 이상)로 구성
 - 단위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축소·은폐, 부적절 대응 미연 방지
- 사안처리지원단은 단위학교 사안처리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 활동 수행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사안처리 점검 및 지원
 - 사안 종결 이후 학교 공동체 회복·행위자 재발방지교육 프로그램 등 사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절차]



행 정 사 항

- ▷ (학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동시 보고
- ▷ (도교육청/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10-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성인식개선담당
☎ 210-5296

1 추진 근거

- 「2022 경남교육」 2-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 2021.1.1.)
- 「2021.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기본 계획」 (민주시민교육과-22598, 2021.11.22.)

2 추진 목적

- 현장 중심 학생안전 지원방안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성범죄 예방 및 경각심 고취
-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안심과 신뢰의 학교문화 조성

3 추진 내용

-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 학교 내 화장실 및 의심 공간을 정기점검(연2회)·수시(불시)점검(월 1회 이상 권장)·특별점검(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의 외부 숙박시설 등) 운영
 - 학교별 특성과 교육공동체의 참여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점검체계 구성 (예: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점검 참여 가능)
- 2020년 전 기관에 배부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및 수업 부교재 등 다양한 장비 활용
- 불법촬영카메라 안심 점검 요구제 실시
 -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일시, 장소에 점검 요구
 - 점검 요구 조건(최소 요구 인원, 요구 주체) 등 세부적인 운영 방법은 단위 학교 사정에 맞게 실시
- 외부점검 체계 운영
 - 상반기(3월~7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외부전문기관 용역 사업 운영
 - 하반기(8월~12월): 경상남도지방경찰청(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주)에스원 외부점검

행 정 사 항

- ▷ (도교육청)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기본 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및 안내
- ▷ (교육지원청) 업무추진 계획 수립 및 학교 안내
- ▷ (학교) 12월 점검 결과 자료집게 보고

IV

부 록





- 학생자살 사안 보고 서식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서식
- 학생 봉사활동 관련 서식

학생자살 사안 보고 서식



서 식 1

보고서식

학생자살(사망, 시도) 사안 경위서(2022)

☞ 초·중·고교 사안 인지 즉시 유선 보고 및 24시간 내 교육지원청(해당과)/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으로 공문 제출

□ 일반사항 및 조치사항

학교명		소재지		학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0 0 0 (휴대폰)
학교장		담당부장		담임		상담	
관련 학생명	김○○	학년반		가족관계		성별	

1. 사안개요

- 일시 :
- 장소 :
- 사고 경위 :
- 사고 관련 전 경위

2. 사망(시도)학생 일반사항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상담내역, 성적, 교우관계, 교사, 부모와의 관계 등)

3. 사망(시도)학생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 담임, 교과과목, 보건교사, 상담교사, 부모 등의 의견

4.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 자살예방교육, 상담, 심리치료 기관 연계 등 학교의 조치사항

5. 사안 발생 후 위기개입 경과 및 향후 대책 방안

-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위기관리팀 회의 개최, 병원 방문 및 유족 위로, 애도교육, 학생 심리지원 등)

□ 학교장 경위서

학교장 의견서

위의 학생 자살사망(시도)사고 사안 발생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2022.00.00. 00학교장 000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서식



서 식 2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

[제22 - 차(접수번호:)]

학 생		소 속 ()학교 ()학년 ()반		성별			
청 구 인	성 명	연락처	(자 택)		관계	보호자 ()	
	(휴대폰)		본 인 () ※해당란에 ○표				
	주 소					[학생과의 관계]	
피 청 구 인	학교명	학교	학교장 성 명			조치 종류	전학 ()
	조치 날짜	2022년 월 일	소재지	()시·군 ()			퇴학 () ※해당란에 ○표
조치를 받은 날		2022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22년 월 일	
청구 취지		() 학생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2. . .자 ()조치의 취소를 구합니다.					
청구 이유 (요지만 간단하게 작성하고 별지에 상세히 기술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한 징계(전학, 퇴학) 처분 재심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경상남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징계처분 중 전학 및 퇴학처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첨부서류 (증빙서류 첨부가능)		1. 청구 이유 기재서 2. 조치 통지서 3.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 및 신분증					

청 구 이 유

청 구 인 :

학 생 : (학교 학년 반)

피청구인 : 학교장

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내린 퇴학조치의 취소를
구합니다.

다 음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별지로 첨부함.

2022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학생 봉사활동 관련 각종 서식



서 식 3

1. 학생 봉사활동 목록

○○학교장

영역	활동내용	기관 (장소)	위치(주소)	소요 인원	가능한 시간대	연 락 처	지 도 자

서 식 4

2. 교내봉사활동 프로그램 활동일지

○○학교장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 내용	활동 학생	지도교사 확인

서 식 5

3. 봉사활동추진위원회 회의록

○○학교장

회의 일시		회 의 참석자	위 원 장: 교감	(인)
회의 장소			부위원장: 부장	(인)
회의 안건			위 원:	(인)
				(인)
기록:				(인)
회 의 내 용				
회의 내용				
의결 내용				

서 식 6

4. 개인봉사활동 실시 계획서

○○학교장

인적사항	학교 제 학년 반 번 성명 :
활동기간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총 ()시간 예정
활동장소	
확인기관	
활동내용	
위와 같이 학생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학생 : 학년 번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의 학생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합니다.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개인 봉사활동은 반드시 계획서의 학교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실행하여야 함

* : 학교장 확인은 단위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함.

서 식 7

5. 개인봉사활동 연간 계획서

학교명 : 학년 반 번 성 명 : 담임명 : (인)

일시	장 소 (전화번호)	봉 사 활 동 내 용	활동 시간	비 고 (이름)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인)				

※ 비고: 가족단위 봉사활동의 경우 기록(예, 4명 아버지, 어머니, 누나 등)

I

II

III

IV

부
록

서 식 10

8.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추진 상황

○○학교장

순	학교명	결연기관수	결연시설명	총결연 대상수	홍보건수	비 고 (특기사항기재)
1	○○초	1	○○복지원	○○명	○회	내용기재
2						
3						
4						
계						

※ 작성방법

- 총 결연 대상 수: 수혜대상자 총인원수 기재(학교 사정에 따라서 전교생, 학년, 또는 학급 인원일 수도 있음)
- 홍보건수: 신문, 방송, 각종 홍보건수
- 비고: 특기사항을 간단하게 기재

※ 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개 이상의 결연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담당자는 3월 22일까지 2020학년도 결연기관에 유선으로 결연 계속성 여부를 확인 후 결연 유지 의사 있는 복지기관인 경우는 결연기관으로 인정함

※ 교육지원청 및 중심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현황이 나타나도록 누계하여 관리

※ 결연기관에 관한 사항 보고는 추후 공문 알림



- 이 학생생활제규정은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안으로써 단위학교는 학교규칙에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기숙사생활규정 4가지로 구성되며, 제·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규정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Q&A를 함께 수록하여 학교 자체 점검과 개선을 돕고자 합니다.

I.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방향

● 개정의 취지

학생, 교원, 학부모(보호자) 등 교육공동체가 상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2002년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생활규정(안)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교육청은 2010년 처음 ‘생활지도 제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였습니다. 이어 2018년 학생과 생활교육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의 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생생활 관련 제 규정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검토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경남의 학생생활 실태에 따른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준안을 통해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청과 교육공동체가 지향하는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교마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장면마다 달리 적용되었던 규범이나 가치들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 모두에게 학교 내외 학생의 활동범위 내에서 보호할 권리와 준수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개정의 근거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음을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제시한 ‘학생인권증진’부분과 ‘체벌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수렴 절차마련
- 학생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
-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 발생 시 구제 보장

둘째,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2014)의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과 그 의미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7)에 따라 학교규칙 구성의 4가지 기본원칙 및 6가지 개별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 학교규칙 구성의 4가지 기본원칙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개별기본권의 보장, 학칙 제·개정의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와 개념 사용)
- 6가지 개별기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명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학생 복지에 관한 권리 보장)

◎ 개정 표준안의 실천 방향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에서는 학교규칙과 이에 따른 규정의 실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에 담긴 가치를 구현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을 위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고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배우고 학교생활에서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의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따라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리에 따르는 의무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4. 장애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을 위한 배려는 물론 비장애 학생 및 내국인 학생들도 이들과 생활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학교가 다양성이 존중되며 차별받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학생이 학교생활 중 건강·안전·복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 관리체계와 규정 등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6. 규칙 준수 및 징계의 목적과 처리과정에서 규제와 처벌 중심이 아닌 ‘상담·치유·예방’에 중심을 두고, 인성·인권·학교폭력(성폭력)예방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교육이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7. ‘2018년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을 토대로 부록편에 신규대조표와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규정 제·개정 시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학생 인권 영역 및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피해 학생 보호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 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등
사생활의 자유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 강요 금지(탈부착 가능) - 여학생의 교복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보장 - CCTV 설치 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수렴 - 개인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 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 신상 정보보호, 학교 밖 명찰 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 표현 제한 금지 - 서명이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보장 - 교내·외 관심사 활동 및 집회 참여 등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 대체 과목 없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자치 및 참여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의견 존중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생 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적법한 징계절차	-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진술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 등 - 징계 내용 공고 금지 -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개선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상담·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의 전환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생활지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생활교육의 과정 중 교원이 학생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교정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고치기 위한 훈계나 훈육 등 현장 중심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생활교육’이란 생활지도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부적절한 언행의 원인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찾아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지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소통하는 주체’로 보고 문제의 원인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호 소통하는 치료와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생활교육’의 바람직함을 알면서도 ‘생활지도’밖에 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이 존재합니다. 경쟁 교육, 학교폭력 등 구조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없이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많은 전문성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학교 운영과 학생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교규칙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상호 공감과 존중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 소통과 공감, 권리와 책임, 참여의 학교문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정한 까닭은 소통과 공감, 권리와 의무의 역량이나 자질이 겸비된 인재가 개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경남교육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며,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생활제규정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지, 학생이 학교생활 중에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참여와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학생·학부모·교원들이 참여하는 진솔한 소통의 문화 속에서 학교생활 관련 제 규정들이 제·개정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규칙 제·개정 시 이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후 표준안이 더 바람직하고 소중한 내용으로 변화해 나가길 바라면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원의 학생생활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I. 학생생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생활 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 4 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 5 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교원, 학교교육 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6 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 ④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협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⑨ 학년·나이·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⑩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⑪ 청소년 미혼모(부)·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⑬ 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⑭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9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⑯ 개인정보권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⑰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협의회’ 운영에 참여한다.
3. 필요 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⑲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3. 교권을 존중할 의무
4.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5.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6.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7.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8.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9. 바른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10.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11.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제 3 장 기본생활

제 8 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 9 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 ②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 ③ 학교구성원과 대화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제10조(이성교제) ① 서로 존중하고 성 평등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 4 장 용의 복장

제12조(용모) ①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교원·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③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제13조(복장) ①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④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⑤ 등·하교 때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⑥ 학생의 이름표는 탈부착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⑦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⑧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4조(용모 및 장신구)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③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장신구(피어싱, 유색렌즈 등)는 금한다.

제15조(신발 및 가방 등) ①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②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 등).

③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제 5 장 학교 내 활동

제16조(등·하교) ①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한다.

② 합당한 사유(농어촌 원거리 통학생·보호자의 요청 등)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8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③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9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20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환경 및 청소) 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2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교내 활동) ① 담당 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과시간 이외 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3.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 6 장 학교 외 활동

제24조(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본드·가스·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⑦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정보 통신

- 제25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폭력·성희롱·성매매·음란물 유포·비방(악플)·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제26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①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컴퓨터·휴대폰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며,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업 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③ 교내 정보통신 기지대는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④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제 8 장 환경과 안전

- 제27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 ②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 ③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 ④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가져가야 한다.

제28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1. 일반쓰레기
2. 재활용품
3. 음식물쓰레기

제29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②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전기머리인두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6.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 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 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 다.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①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 ③ 언어·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 ④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정보보호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유의
-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등 재난안전 유의
- ⑥ 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 준비 등 직업안전 유의
-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요령 숙지

제 9 장 규정의 개정

- 제31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2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역할)

- ① 제·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③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33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이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기숙사생활규정’ 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1. 학생 : 학급·학년회의·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부모 등 보호자 :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 : 부서별·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적용)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정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Ⅲ. 학생선도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규정은 ‘○○○○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원칙)

- ①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인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 장 학생선도위원회

제 5 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를 둔다.

② 이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③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④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⑤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⑥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선도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⑦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기능) ①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또한 ‘학교내의 봉사’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의결(위원 2/3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7 조(사안설명) ① 각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담당 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징 계

제 8 조(적용 및 종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제 9 조(기간 및 운영) 징계의 기간 및 운영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 학교 환경 미화 활동, 식물(텃밭)가꾸기 등
2. 교재 교구 정비
3. 권장도서 읽고 소감문 쓰기, 좋은 시 암송 등
4. 상담(교육)교사 상담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활동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위탁기관은 상담전문가·청소년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한다(단,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징계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을 계약한 학교교육과정 이수
※ 이 경우 교육감은 자체 운영이 어려운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외부 교육기관과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고등학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⑥ 퇴학처분 전 조치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숙려 기간 2주)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기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의 학생생활제규정에 의한 교육과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3.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4. 고사 전 집단 부정행위를 도모하여 실행한 학생
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6.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7. 미인정결석을 월 3일 이상 한 학생
8.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월 3회 이상 한 학생
9. 학교장이 만들거나 인정하는 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10.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조한 학생
11.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학생

12.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13.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학생
14.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할 필요가 있는 학생
15.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학생
16.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7. 학교 및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8.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0. ‘청소년유해약물’(음주·흡연·가스·본드 흡입·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학생
21.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22. 흥기를 휴대한 학생
23.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며,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학교폭력 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 제11조(심의절차) ①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교육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보호자(대리인 참석 가능)를 내교하게 하여 진상을 알리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교육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보호자(대리인 참석 가능)를 내교하게 하여 진상을 알리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③ 제8조제1호와 제2호의 학교내의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제1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재심 거부 시 사유 반드시 기재)
-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퇴학처분 시 학생과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에 따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14조(징계의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

제15조(징계의 가중)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긍정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보관한다.

②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출결 처리) 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9조(적용)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중 학생생활규정 제9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IV. 학생자치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 생 회

제 4 조(명칭) 이회는 ‘○○○○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 5 조(회원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은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권리 및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이 회의 대표(학생회장·학생부회장·학생회부장 및 차장·반장·부반장 등)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명시된 ‘업무·권한·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활동) 이 회의 회원은 법령에 따른 종교·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협의·지원사항) 이 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2.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3.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4.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5. 각종 봉사 활동
6.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7. 학생권리 옹호관 활동
8.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심사 연대(위원회·협의회·행사참여 등) 활동
9.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

제 9 조(승인) 이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학교장이 승인을 유보, 거부할 경우 해당 사유를 신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 ① 이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② 이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1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 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학생회 임원(학생회장·부회장)·학급 임원(반장·부반장)·동아리 연합회 임원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 기간: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기록
2. 징계 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제 3 장 학 생 총 회

제12조(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3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14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4 장 대 의 원 회

제16조(구성)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임원, 학급의 대표, 동아리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7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1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3월~다음해 2월까지)으로 한다.

제19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 ②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심의
- ③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 처리
- ④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 ⑤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 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 안 발의 및 심의
- ⑦ 학생총회 소집
- ⑧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정보 교류 및 관심사 연대 활동에 대한 심의
- ⑨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 ⑩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 ⑪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사항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
- ⑫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1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자격상실) 이 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 ③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2~7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 5 장 운 영 위 원 회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 ②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③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 ④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 ⑤ 학생 학교규칙 제·개정팀 운영
- ⑥ 학생권리옹호관제도 운영
- ⑦ 제20조에 의해 심의·의결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 ⑧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의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 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부서)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 1. 총무부: 사업 계획예산·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 2. 문화부: 예술 활동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 3. 학습부: 학습 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4. 체육부: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 5. 생활도우미부: 학생생활규정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 6. 학생권리옹호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생활규정 개정 요구, 불편·불만사항 모니터 및 해결 방안 활동
- 7. 정보관리부: 스마트예절 및 사이버 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참고) 학생권리옹호관제도

- 목적과 구성: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학생권리옹호관(학급 당 1명)을 둔다.

○ 활동

- ▷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상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 준다.
- ▷ 학생들 스스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편함, 불합리함 등을 접수·조사·시정하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
- ▷ 참여하는 자율과 책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이 실제 반영되도록 하여 학생자치 활성화와 민주시민 의식의 장이 되게 한다.

제27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부 부장은 제26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8조(선출) ① 정·부회장은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각 부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9조(임기) 정·부회장 및 각 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0조(자격상실) 정·부회장 및 각 부 부·차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2.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4.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2~7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 6 장 학 급 회

제31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2조(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명, 부반장 1명,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〇명(〇〇부, 〇〇부, 〇〇부, 〇〇부, 〇〇부, 〇〇부, 〇〇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3조(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6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4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35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6조(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3.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2~7호)가 확정되었을 때
4. 학급회의에서 학급 학생 2/3이상이 불신임하고 학급담임교사의 동의를 받았을 때

제 7 장 학생자문위원회

제37조(목적) 학생회의 바람직한 자치활동을 도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써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구성 및 운영)

①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사,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회 각 부에 책임자문위원을 두어 해당 부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9조(책임) 학생자문위원은 학생자치활동 자문 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한다.

- ① 이 규정 제37조(목적)에 따라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 ② 학생회장(학급반장)이 요청하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에 성실히 임할 책임
- ③ 학생회·학급 임원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자유로운 의사표시, 공정한 진행을 보장할 책임
- ④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의, 학생총회가 정해진 회의 규칙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책임

제40조(기능)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의 의결 및 건의 사항
3.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 8 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제41조(목적)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선거권)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43조(입후보자 자격)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44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이 회의 회원인 재학생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 ② 학생회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세부 시행 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선거의 시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12월 중에 실시한다.(단 학교실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제46조(임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단,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선출)

제47조(입후보자 등록)

- ①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 ③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48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한 충분한 선거운동기간(3일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49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기표소 또는 온라인 투표(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입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기표소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②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에 참여한다(온라인 투표시 투표 인증번호표를 부여받고 참여함).
- ③ 개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1명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50조(당선인) ①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3일 이내 재투표를 거치고 그래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④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의결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제51조(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학생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학생
3.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학생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학생
5.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학생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학생

제52조(기타) 이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장 학급회 반장·부반장 선거

제53조(목적) 학급 반장, 부반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입후보자의 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하며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55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① 학급 반장과 부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반장으로, 차점자가 부반장으로 선출된다(부반장 선거 따로 가능).

② 학급회 각 부장은 학급 반장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음)

제10장 동아리(청소년 단체) 활동

제56조(명칭) 이회는 ‘○○○○학교 동아리(청소년 단체)’라 한다.

제57조(목적) 이회는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심성을 도모하여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각 동아리와 청소년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9조(회원의 활동과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동아리(청소년 단체)를 대표하여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제57조 목적에 따른 의무를 다한다.

② 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사(연합 활동일 경우 담당 지도교사와 함께 해야 한다)에게 사전 신고하고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③ 바람직한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회의 목적에 따라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독립적인 ‘동아리활동수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 시 지도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0조(가입과 탈퇴) ① 매 학년도 3월 중 각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별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신규 구성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지도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매 학년도 3월 초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7일 전에 동아리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존의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도 매년 등록해야 한다.

제61조(임원의 구성) 각 동아리 대표는 동아리 모임에서 직접 선거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매년 3월 중에 선출한다.

제6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제59조에 부합하는 일을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동아리 연합회 임원의 선출 및 승인기준) ① 회장, 부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 2인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동아리 임원의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며 이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③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단,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선출)

제64조(활동 지원) ① 동아리활동지원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경비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인가된 동아리의 연속성을 위해 지도교사를 위촉해야 한다.

제65조(활동 정지 및 해산)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생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동아리를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다.

①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학생생활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학교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 구성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제11장 재 정

제66조(지출) ① 학생회의 경비는 학교예산 중 학생자치활동비로 지출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예산을 지출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회장이 요구하고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7조(회계 연도)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8조(예산 집행 및 결산)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규정의 개정

제69조(적용)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중 학생생활규정 제9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V. 기숙사학생생활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등에게 학업 편의 및 면학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선발시 유의사항

- ①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우선선발학생과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②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 일반 학생: 원거리 통학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열악한 학습환경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
 - 나. 장애 학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 학생
 - 다. 기타 학생: 입사 희망자 중 신청을 받아 추천하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생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

제 2 조(기능)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 ‘기숙사학생자치회’는 해당 학교 기숙사 생활에 참여하는 학생수(규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 유무를 결정하거나 단위학교 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 4 조(자치회 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대표: 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층장 등으로 구성
2. 대표의 역할
 - 가. 회장: 자치회 총괄,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전 협의 및 건의
 - 나. 부회장: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역할을 대행
 - 다. 학년대표: 각 학년을 대표하여 기숙사 내 생활에 있어서 학년별 의견수렴, 건의 및 전달사항 소통
 - 라. 층장: 기숙사 동의 각 층 대표, 각 층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 일부 학교에서는 각 호실마다 ‘방장(실장)’을 두고 점호 및 점검, 청소 확인 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각 호실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매주 순번을 통한 당번(책임)제 운영 방법 권장

- 각 호실마다 동학년이 생활할 것을 권장

☞ 여러 학년이 섞여 생활할 경우, 선후배 문화, 학교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같은 학년끼리 생활함으로써 학업과 휴식문화 등에 동질성 회복

제 5 조(대표 선출 및 임기) 대표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대표: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

2. 임기: 1년

3. 대표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에 참여하는 ‘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총장’에 대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6 조(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생활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생활에 따른 건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③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기숙사생활수칙

제 8 조(일반적 사항) 학교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입사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안전과 위생을 지키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2.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건강 관리 활동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전기와 물은 아껴 쓰고 함께 이용하는 기기들은 사용 방법을 지킨다.

5. 기숙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감의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6. 외부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 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이나 학교 측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게 되면 즉시 사감 등에게 알려야 한다.

7.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 체질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9.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0. 기숙사 출입 시에는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신고한다.
11. 몸을 청결히 하고, 개인 의류 등에서 악취·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알린다.
13. 음주, 흡연을 금지하며, 약물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14. 촛불 점등 및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절 금한다.
15. 호실의 공용물품은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16.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 (방충망이 고정돼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17.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않으며(비누, 칫솔, 과일, 음식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해결이 안될 경우 사감실에 신고)
18.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꺼짐 상태를 확인한다.
19. 호실에 비입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20. 현금 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21. 기숙사 시설물을 임의로 변용하거나 보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2.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이나 곤충 등을 키워서는 아니 된다.
23. 성냥, 라이터,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다.
24. 기숙사생활 중 카드,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는 하지 않는다.
25.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탈출로프를 이용한다.

※ 기숙사생활수칙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감 및 담당교사는 경중과 횟수에 따라 '주의, 경고'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학교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안에 따라 '선도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생활(기숙사생활 포함) 중 선도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중,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학생은 기숙사생활 자격을 상실한다.

제 9 조(독서(정독)실 이용) ① 열람대(지정석 등)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독서실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지킨다.
- ③ 독서실 입실 시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다.
- ④ 음료수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⑤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도구(헤드폰 등)를 사용해야 한다.

제10조(컴퓨터실 이용) ① 휴식시간 이외에 게임, 만화나 드라마, 스포츠 등의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은 금한다.

- ②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 ③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하드보안관이 설치되어 종료 시 자료 자동 소멸)
- ④ 입실 시 음료수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⑤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 ⑥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한다.

제11조(세탁물 관리) ① 세탁물은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및 장소에서 세탁한다.(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 세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한다.)

- ② 개인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되도록 한다.
- ③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제12조(외박과 외출) ①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일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에 사감에게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과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 ③ 외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사감에게 외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출자의 귀사 시간은 22시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미리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 ⑤ 공휴일 이외의 외박 및 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감이 직접 통화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한 후 허락한다.
- ⑥ 외박 또는 외출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숙사 재입사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외박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 ⑧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사 시 준비물) 입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준비한다.

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2. 의류: 생활 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4. 학습 자료: 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5. 현금: 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하되,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 위탁
6. 개인용 실내화: 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 구입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8. 학습을 위한 전자기기(노트북 등)이나 핸드폰

제14조(기타) ① 기숙사 내에 설치된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내방송 및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 사항을 숙지한다.

- ② 등·하교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 ③ 등교 시간 및 귀사 시간을 준수한다.
- ④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동,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동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⑤ 입·퇴사 시, 건강 이상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호자의 호실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⑥ 개인용 옷장(사물함) 열쇠가 필요한 경우 예치금(10,000원)을 사감실에 예치하고 열쇠를 받아 본인이 관리하되 퇴사 시 반드시 반납하고 예치금을 찾아간다.
- ⑦ 출판물 구독은 개인적으로 해당 신문 지국에 신청하여 구독할 수 있다.
- ⑧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칠판에 기록하지 않고 사감실에 연락한다.
- ⑨ 설날·추석 명절의 연휴 기간과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휴교일 경우 휴관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일주일 이상은 청소와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 ⑩ 아침, 저녁 식사 배식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 ⑪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 또는 담임교사와 함께 출입할 수 있다.
- ⑫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 또는 야간자율학습 시간 중에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과 교사의 승낙을 받은 후 사감실에 신고하고 입실한다.
- ⑬ 노트북, 전자기기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 상주하는 시간에만 하고, 등교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 ⑭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생활제규정 체크리스트

영역 1 생활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 결과	
1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규범 준수 의무와 권리	☐ 반영	☐ 미반영
2	편견과 차별적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수정	☐ 반영	☐ 미반영
3	염색, 파마 등 두발의 색상, 모양, 길이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 삭제	☐ 미삭제
4	화장 등 용모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 삭제	☐ 미삭제
5	양말, 신발 등의 색상 및 형태 제한, 교복 위 방한용 덧옷 착용금지 (색상,모양 규제포함)	☐ 삭제	☐ 미삭제
6	여학생 교복의 치마와 (반)바지 선택권을 보장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7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	☐ 삭제	☐ 미삭제
8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학생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관리방법	☐ 반영	☐ 미반영
9	소지품 검사에 대한 안전성, 긴급성, 동의여부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 마련	☐ 반영	☐ 미반영
10	선도부원의 역할 (학생 점검·지도 역할 삭제, 학생 교육은 교사의 직무임)	☐ 반영	☐ 미반영

영역 2 선도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 결과	
11	선도위원회 회의 시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반영	☐ 미반영
12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재심요구	☐ 반영	☐ 미반영
13	징계 회부 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반영	☐ 미반영
14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 반영	☐ 미반영
15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과도한 징계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	☐ 반영	☐ 미반영
16	선도(징계)위원회 징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제5호) :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회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의무교육대상자 제외)	☐ 반영	☐ 미반영
17	특별교육 이수(위탁)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사항	☐ 반영	☐ 미반영
18	학교봉사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 반영	☐ 미반영
19	선도위원회 징계 결과 공고 (‘○학년 김○○’표기도 식별 가능)	☐ 삭제	☐ 미삭제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사항	☐ 삭제	☐ 미삭제
2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침해행위’ 관련 사항	☐ 삭제	☐ 미삭제

영역 3 자치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결과	
22	학생회 임원 선거 등 학생 자치활동 참여권 보장 :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을 학생회 회칙 내에 포함	☐ 반영	☐ 미반영
23	학생회장단 및 학급임원 자격 제한 : 성적, 출결, 사소한 징계(교내봉사)와 관련한 지나친 규제	☐ 삭제	☐ 미삭제
24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석 가능	☐ 반영	☐ 미반영
25	선거권 제한 내용 : 졸업 예정자(초 6학년, 중·고 3학년), 선거관리위원의 제한	☐ 삭제	☐ 미삭제
26	교외생활 및 단체 활동 제한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가입 금지,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에 대한 징계	☐ 삭제	☐ 미삭제
27	학생 자치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위원회 운영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 학생자문위원회의 과도한 통제 지양	☐ 반영	☐ 미반영
28	금품 선거 예방 및 공정 선거를 위한 생활지도 철저	☐ 반영	☐ 미반영

영역 4 제·개정 절차 규정

순	점검 항목	점검결과	
29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시 학생 위원 참여	☐ 반영	☐ 미반영
30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시 학생 발의권	☐ 반영	☐ 미반영
31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시 교육 3주체 의견수렴	☐ 반영	☐ 미반영

I

II

III

IV

부
록

학생생활제규정 Q&A

학생생활규정

Q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와 관련하여 학교규칙의 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개정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규정 즉,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등을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 10호)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제규정”이라고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부록 2. 학생생활제규정 운영안내/ 4)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근거법령 참고

Q2. 학교생활규정은 매년 개정해야 하나요?

A. 매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매년 새 구성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매년 학교생활제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면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신입생과 그 보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학교문화와 변경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매년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학교생활제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교육청 지침 포함) 내용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할 때에도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규정 개정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규정 개정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수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홈페이지 탑재하여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안내·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Q4. 지난해 학교생활제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어도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안내·홍보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안내하고 그 내용도 교육해야 합니다.

- ▶ 매년 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란), 학교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등을 통해 학교생활제규정을 공시하고, 그 내용도 교육해야 합니다.
- ▶ 학교생활제규정에 대한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보호자 교육, 가정통신문, 교사 연수, 학생 교육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A.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학생·학부모(보호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 표준안의 「학생생활규정」 제9장제31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Q6.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협의회, 토론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가정통신문, SNS를 통한 온라인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학생 의견은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총학생회 등),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할 수 있습니다.
- ▶ 교원의 의견은 부서별·학년별·교과별 협의회 및 교직원 회의를 통해 수렴할 수 있습니다.
- ▶ 학부모(보호자) 의견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하여 수렴할 수 있습니다.

Q7.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 ▶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학생선도규정

Q1.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A. 위원은 생활교육담당부장을 포함한 교원으로 하되, 세부구성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서 정하고,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학급담임교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표준안의 「학생선도규정」 제2장제5조(구성 및 의결)

-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이 위원회’)를 둔다.
- ② 이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 ③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 ④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 ⑤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Q2. 학생선도위원회의 개최, 참여,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나요?

A.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 학생선도위원회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 ▶ 학생선도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Q3. 학생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의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고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징계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가정,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집중 관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하며, 선도 학생의 추수지도까지 실시하여 선도처리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Q4. 학생선도위원회 개최를 안내하였으나 학생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여 학생선도위원회가 계속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A. 학생이나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생선도위원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거나 출석하기 어렵다면 진술서 등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의견 진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 진술의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음에도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한다면, 일정 기한을 정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후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Q5.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졌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퇴학처분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안교육의 안내 및 알선 등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Q6.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선도위원회의 퇴학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에 재심의 청구, 도교육청에 재심청구를 모두 할 수 있음을 조치 결과 통보서를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Q7.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면서 재심의,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A.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이 표준안의 「학생선도규정」 제7조제5항에서는 ‘⑤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Q8. 학교내의 봉사 및 사회봉사는 학생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시간(학교생활기록부 내의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9.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생선도위원회 결정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SNS 등을 통해 보내도 보지 않고 답변도 없습니다. 학생도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문자 등으로 결정을 통지하여도 될까요?

A.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 문자의 경우 수신 확인이 어려워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편(내용 증명) 송달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0. 학생이 학교 밖에서 절도 및 도박 등의 사항으로 경찰서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이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A.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학생이 절도 및 도박 등으로 경찰서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단 학교생활규정에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Q11. 학생선도위원회 결과 징계조치 내용 중 외부기관과 연계 시행하는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처분의 '1일 6시간 기준'의 제시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외부기관의 운영 특성상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 제시된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학교는 사전에 실시 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적절성 및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같은 사안으로 처분된 결과가 A학교는 1일(2시간), B학교는 1일(6시간) 기준은 불합리하며, 1일(6시간)기준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특별교육 시간을 준용한 것입니다.

Q12.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조치(학교내의 봉사)에 따른 운영 시간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학교 실정에 따라 총 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단 18시간 이하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 ▶ 단, 이 표준안의 「학생선도규정」 제3장제9조에 따른 '① 학교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의 내용에 맞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자치규정

Q1. 학생자치와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규정의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규칙 제·정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내거나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주요 운영사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표준안 「학생자치규정」 제2장제7조(활동)

이 회의 회원은 법령에 따른 종교·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Q2. 전교어린이회 규정이나 다모임규정만 있으면, 학생자치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해야 할까요?

A.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어린이회 규정이나 다모임규정을 학생자치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준안에 따른 목적, 근거, 회원 및 구성, 권리와 의무, 활동, 임원자격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라는 용어 보다는 ‘학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표준안은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안으로써 단위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

II

III

IV

부
록

Q3. ‘학교내의 봉사’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해도 괜찮을까요?

A.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및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자격 기준에서 ‘출석사항이 90%이상인 자’, ‘학교내의 봉사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 등은 출결 및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이 표준안 「학생자치규정」 제2장제11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학생회 임원(학생회장·부회장)·학급 임원(반장·부반장)·동아리 연합회 임원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 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기록
2. 징계 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Q4.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투표권을 4학년부터 주면 될까요?

A.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생은 입학과 함께 학생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 받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됩니다. 입학과 동시에 부여된 학교구성원으로서 학생회장의 의사결정은 저학년 학생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교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의 중요성과 어떤 대표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Q1. 학생생활제규정 중 규정 제정의 목적조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요?

- A. 학생생활제규정 제정의 기본목적은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학생생활제규정의 적용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나요?

- A. 적용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제시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표준안 「학생생활규정」 제1장제3조

- ▶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Q3.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과 같은 용어 사용은 인권침해인가요?

- A. 네, 자의적이고 주관적 해석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와 같은 용어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 ▶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징계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규칙을 비롯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타인의 권리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하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불이익적 규정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실제 학교 현장의 능동적 실천 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관적 해석이 우려되는 용어의 예)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성행이 불량하여, 불건전한, 풍기문란, 사치품 등

Q4.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개정해야 하는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결손가정 학생, 학습부진아, 학업중단학생, 살색, 모든 책임은 학생(학부모)에게 있다 등’과 같은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편견이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 권위적인 규정, 비현실적인 규정은 쉽고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해야 합니다.

Q5. 용모, 복장, 소지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과 관련하여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규정들은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 용모, 복장 관련 규정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과도하게 사적 자치영역을 제한하거나 행복추구권, 개성 발현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한 규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건강권의 측면에서 복장 규정은 완화 나가도록 권장함

▶ 휴대기기 사용 규정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 안전문제(하교 후 부모와의 연락 등)에 따라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임.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특히 위반 시 압수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구성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통신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

▶ 규정 위반 물품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와 압수 보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학생의 동의 하에 검사하여야 할 것임.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지도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별도의 징계조치 여부를 논할 수 있음. 압수된 물건의 경우도 별도의 인계 조항을 마련(예, 보호자 상담을 통해 인계 등)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영구 폐기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

Q6. 반성문, 서약서의 제출은 인권침해로 개정해야 하나요?

A. 반성문 쓰기 강요, 사실 확인이나 경위 파악을 넘어서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각서, 징계 해제 조건으로 학생 당사자와 보호자의 서약서를 필수로 하는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단,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생활교육을 위한 진술서나 회복적 성찰문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Q7. 뽁지(뽁뽁이)를 쓰도록 지시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교육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뽁지(뽁뽁이)쓰기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학생생활교육의 방편으로 명심보감이나 명언집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하거나 성찰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다만, 해당 학생의 연령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개 명언 문장을 50번씩 쓰기’, ‘명심보감을 A3 용지 앞뒤로 빈틈없이 뽁뽁하게 쓰기’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사실상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가혹행위에 해당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Q8. 학교폭력처리나 교권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학생생활제규정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생활교육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교권보호 사항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처리 절차이므로, 학생생활제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성교육진흥법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청소년 보호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 3 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 4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제 7 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 8 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 3. 21.]

- 제 9 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 [제목개정 2012. 1. 26.]

-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목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④ 삭제 <2019. 8. 20.>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0.]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17954호, 2021. 3. 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9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3 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 4 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전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제 5 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31.>

1. 해당 시·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제 6 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 7 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 8 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 9 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의2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및 제22조에서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1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조 삭제 <2020. 2. 25.>

제25조(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0.]

제34조 삭제 <2021. 3. 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31789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 2020.9.12.] [법률 제17472호, 2020.8.11., 타법개정]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044-203-6701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 6 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청회등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공청회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본조제목개정 2019.12.10]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 차관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0.]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2019.12.10 제167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3.17.] [대통령령 제30527호, 2020.3.17. 일부개정]

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 044-203-6701

제 1 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여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 4 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교육부·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 또는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4.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 6 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교·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은 합산한다.

- 가. 교육경력
- 나. 교육행정경력
- 다. 교육연구경력

2.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부장관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급별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운영한다.[개정 2018.6.5, 2020.3.17]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
 2.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6.5.]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7.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시간 이상보다 강화된 교원연수 이수기준을 각각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관련기관등"이라 한다)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2.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수요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관련기관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정 유효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및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권고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27호 202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0.3.24.] [법률 제15987호, 2018.12.1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2016.1.6., 2016.12.20., 2017.12.12.>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시행일 : 2018.3.13.] 제2조

제 3 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② 친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4 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 7 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 9 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 ④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정부는 자율 규제 of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는 제7조에 따른 심의·결정의 효력 및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2.>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인 경우: 「공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

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우: 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인 경우: 해당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제14조(포장 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와 제14조에 따른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분·격리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매체물과 같은 호 차목·카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고시) ①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친권자등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13.5.20.]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3.24.>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⑦ 제5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⑧ 제4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2., 2014.3.24.>

⑨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3.22., 2014.3.24.>

[시행일: 2015.3.25.] 제28조제4항,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①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②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제 5 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4.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5. 청소년유해악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 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2. 환각물질 중독으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및 재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운영, 중독 판별 검사 및 치료와 재활, 친권자 등의 신청 및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5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이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제3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시설·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 7 장 보 칙

제42조(보고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4조(수거·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4.3.24.>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수량·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거·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6.1.6., 2016.12.20.>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

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 7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5.3.25.] 제4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종류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제52조(권한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보호, 매체물 또는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3.2.>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제 8 장 별 칙

제55조(벌칙) 제30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제3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6.1.6., 2016.3.2., 2016.12.20.>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 7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5.3.25.] 제59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 중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60조(벌칙) 제15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제61조(벌칙) ①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43조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형의 감경)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64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7호·제7호의2·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4446호, 2016.12.20.>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6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제13719호(형법), 2016.5.29, 2021.3.1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 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 제 4 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3.16]

제 5 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6 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8 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 9 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

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 3 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2020.3.24] [[시행일 2020.10.1]]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시행일 2022.1.27.]]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1.1.26]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

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2021.1.26]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시행일 2020.10.1]]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신설 2021.1.26]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⑦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2021.1.26]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1.1.26]

[본조제목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 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16]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6.]

제 4 장 아동보호사건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

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등이 소유한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

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

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6.1.25]]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송치서)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송)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할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제4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제 5 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시행일 2020.10.1.]]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⑥ 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0.3.24] [[시행일 2020.10.1.]]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48조(보조인) ①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1.3.16]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본조제목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56조(준용)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0.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별 칙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10.1]]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2021.1.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41호]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9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을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16.5.29. 제141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 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20.3.24 제170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특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4항 후단 중 경찰관서의 장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송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47조, 제50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부 칙[2021.1.26 제179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출동에 따른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급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3.16 제179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I

II

III

IV

부
록

경남교육 2022-033

2022.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 보 게 히



총괄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기획

한영구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

김상문 대안치유담당 장학관

강형천 학교폭력예방담당 장학관

강지명 성인식개선담당 사무관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 사무관

연구

김홍재 장학사

이은택 장학사

박민규 장학사

제종준 장학사

조은희 주무관

박진호 주무관

박빛나 주무관

박근나 상담사

하상수 장학사

신재봉 장학사

최재규 장학사

곽민경 주무관

이수정 주무관

이향연 주무관

김서훈 주무관

박보경 상담사

김재우 장학사

이상겸 장학사

이정은 장학사

배새롬 주무관

조정민 주무관

진갑승 주무관

손휘향 주무관

발행 2022년 2월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